BSPE99675-12058-7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인프라 및 공간모델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Urban Infra and Spatial Model for Construction of Marine Smart City focusing Safety

2019. 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인프라 및 공간모델 개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05. 31.

총괄연구책임자: 이 주 아

요 약 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와 함께 연안에서의 그 피해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연안지역은 국가항만, 발전소, 산업단지 및 배후주거지 등이 밀집해 있어 재난시 대규모 및 복합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국민적 불안과 관심이 크게 증대되어 있다. 이와 함께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 해안가 침수피해('03.09), 최근 태풍 '차바'로 인한 부산 마린시티 침수피해('16.09)와 같이 특히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연안도시의 도시복원 관련 인프라 미비 문제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남은 단편적 위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기술요소 개발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초년도 사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고, 활용가능 자료의 수집을 통한 실증분석 연구 수행으로 기초적 정보를 구축하며,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도입 및 적용 가능성 검토를 통해 자연재해 대응형 해양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 발굴·추진과 함께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체계적 전략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접근과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시티는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다양한 전략과 콘텐츠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00년대에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U-City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발전없이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재개하였다. 한편 연안은 다양한 환경, 생태, 자원적 요소가 존재하며, 산업입지에 유리하고 레져·관광을 위한 거점이자 매력적인 거주지로 다방면의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안지역은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이로부터 해양국토를 보전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해양(연안)공간에서 특히 요구되는 재난·재해 대응 계획·기술을 스마트도시와 접목함으로써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과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SUMMARY

The natural disaster risk and the damage extent of the coastal areas are growing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The public's concern and interest are increasing with large scale damage from the disaster, since national port, power plant, industrial complex, residential site, and many others are concentrated in that areas. The water damage of Busan from the typhoon Maemi('03.09) and Chaba('16.09) showed the problem of poor infrastructure and the limit of disaster-safety management for the restoration of coastal cities. This means that the basic solutions, not the emergency responses, are necessary.

This study is the first year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elements to construct the Marine Smart City focusing Safety. I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the research on the domestic and foreign trends of Smart City. Second is the collection of critical information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available data. Third is on the concept of the Marine Smart City focusing Safety and on the introdu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smart water management technology. Fourth is the proposition on the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arine Smart City responding to the natural disaster. The last is the suggestion on the necessity for the approach and the action 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The Smart City is a new model of urban innovation and is pushed forward with many strategies and contents. Recently the government and the business renewed their efforts on Smart City, but there had not been some particular progress on it before. There are various elements relating to environment,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in the marine(coast). The marine(coast) is a priceless space where has merit of industrial and residential sites, including leisure and tourism. But the coastal areas is vulnerable to the natural disast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and to preserve the country. This is the time when the innovative efforts have to be made to construct a new city model and to produce a successful case as a leading country of the global Smart City.

목 차

제1장. 서 론 ····· 3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개발 중요성 ····· 5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6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사례 ····· 11

1. 국외 정책동향 ····· 11
2. 국내 정책동향 ····· 15
3. 선진사례 ····· 20

제3장. 우리나라 연안지역 유형 및 유형별 특성 ····· 65

1. 분석범위 및 방법 ····· 65
2.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 ····· 66
3. 연안지역 권역별 기초통계 분석 ····· 68
4. 연안지역 유형분류 및 유형별 특성 분석 ····· 70

제4장.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모델 ····· 77

1.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 ····· 77
2.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모델 구상 ····· 84

제5장. 결 론 ····· 95

1. 소 결 ····· 95
2. 향후 연구과제 ····· 97

참고문헌 ····· 101

부 록 ····· 105

표 목 차

<표 2-1>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안) ·····43
<표 2-2> 중국 스펀지시티 건설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53
<표 2-3> 중국 지방정부 스펀지시티 사업추진 사례 ·····57
<표 2-4> 상해시 항만구역 스펀지시티 조성계획 ·····60
<표 3-1> 연안지역 인구 및 사업체 현황 ·····69
<표 3-2> 연안지역 토지이용 현황 ·····69
<표 3-3> 변수간 요인분석 결과 ·····70
<표 3-4> 비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71
<표 3-5> 군집별 해당 읍·면·동 ·····72
<표 4-1>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전수준 ·····79
<표 4-2> 주요 스마트시티 정의 ·····81

그 림 목 차

<그림 1-1>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재난·재해 발생 가능성 ·····6
<그림 1-2> 연구개발 목표 및 세부 성과목표 ·····6
<그림 2-1>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추진 방향 ·····16
<그림 2-2>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16
<그림 2-3> 요코하마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및 주요 참여업체 ·····22
<그림 2-4> Kitakyushu Smart Community Creation Project 계획지역 이미지 ·····24
<그림 2-5> Kitakyushu Smart Community Creation Project 에너지 관리 시스템 ·····25
<그림 2-6> Toyota city low-carbon society verification project Promotion Council ···26
<그림 2-7> 도요타 에코풀타운 시설 ·····27
<그림 2-8> 도요타 에코풀타운 계획안 ·····28
<그림 2-9> 후지사와 SST 모델 ·····30
<그림 2-10> 후지사와 SST 조닝 및 시설계획 ·····30
<그림 2-11>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전경 ·····32
<그림 2-12>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3가지 키워드 ·····33
<그림 2-13> 카시와노하 국제 캠퍼스타운 구상 ·····33
<그림 2-14>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용, 감시, 제어하는 AEMS ·····34
<그림 2-15>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 운영시스템 ·····36
<그림 2-16> 후나바시 모리노시티 Conceptual image of the town blocks development plan ·····37
<그림 2-17> 후나바시 모리노시티의 Smart & Share Town 개념 ·····38
<그림 2-18> 후나바시 모리노시티의 5가지 공유행위 ·····38
<그림 2-19> 후나바시 모리노시티 마스터플랜 ·····39
<그림 2-20> 싱가포르 스마트시티의 Building Blocks of Smart Nation Vision ····41
<그림 2-21>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테마 ·····42

<그림 2-22>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기업 ·····43
<그림 2-23> 경기도 광명시흥 TV 기 계획안(현황) ·····44
<그림 2-24>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모델 ·····47
<그림 2-25> 경기도 광명시흥 TV 에너지 테스트베드 내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안) …48
<그림 2-26> 제로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모델 ·····49
<그림 2-27> 경기도 광명시흥 TV 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방안(안) ·····49
<그림 2-28> 스펀지시티 개념도 ·····51
<그림 2-29> 중국의 스펀지시티 개념 및 주요내용 ·····51
<그림 2-30> 중국 스펀시시티 사업추진전략 ·····54
<그림 2-31> 상해시 스펀지시티 조감도 ·····54
<그림 2-32> 북경시 스펀지시티 조감도 ·····54
<그림 2-33> 중국 중앙정부 스펀지시티 시범사업 분포도 ·····55
<그림 2-34> 상해시 항만구역 스펀지시티 조성계획 ·····60
<그림 3-1> 분석 범위 ·····65
<그림 3-2>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71
<그림 4-1> 도시의 진화 ·····77
<그림 4-2> 도시의 지능사회 플랫폼으로의 발전 ·····78
<그림 4-3>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79
<그림 4-4> 스마트시티 목표 ·····80
<그림 4-5> '해양도시',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개념의 융합 ·····84
<그림 4-6> 스마트시티 도시상 ·····85
<그림 4-7>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성 체계 ·····85
<그림 4-8> 지능화 서비스 비율 및 활용 분야 ·····86
<그림 4-9> 스마트시티 구성요소(Frost & Sullivan, 2016) ·····87
<그림 4-10> 스마트시티 발전단계와 구성요소(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88
<그림 4-11>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구성요소 ·····89
<그림 4-12>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도 ·····90
<그림 4-13>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도시 인프라 구축모델 ·····91

제1장

서 론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개발 중요성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제1장. 서 론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성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공간 취약성 증가, 자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도시의 대규모 재난 가능성 증가와 도시민들의 불안감 가중

– 연안에서의 자연재해 위협은 전 지구적 이슈이며, 피해규모도 점차 커짐

* 최근 인도네시아 팔루의 지진해일('18.9)에 의해 약 3,500명의 사망·실종 인명피해 발생

– 연안지역의 경우 국가항만, 발전소, 산업단지 및 배후주거지 등이 밀집해 있어 재난시 대규모 및 복합적 피해가 예상되며,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관심도 크게 증대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북부에서 규모 7.0의 강진 발생시 2시간 내 동해안의 지진해일 발생 가능

우리나라 연안지역 복합재난 현황

2016년 태풍 차바: 폭우 및 만조위에 의한 하천범람 및 해일 침수범람

피해지역:		피해양상:
– 울산	– 태화강 일대	– (해일+하천) 침수범람
– 제주	– 용담1동 복새천 일대	– 하천 침수범람
– 부산	– 해운대구 마린시티, 송도해수욕장 해안도로	– (해일+월파) 침수범람
– 창원	– 진해구 응원동 일대, 마산 합포구 일대	– (해일+내수) 침수범람

2017년 슈퍼문(백중사리): 저지대 침수범람 및 역류

피해지역:		피해양상:
– 인천, 보령, 장항	– 소래포구, 오천항, 어선물양장 등	– 범람+역류
– 영광, 목포	– 법성포 구시미마을, 용해동 등	– 역류
– 통영, 창원	– 동호안수협공판장, 마산항해운동 등	– 범람
– 제주	– 우도 천진항, 오조포구	– 범람+역류

– 최근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사고('19.1) 발생과 함께 해양안전 감시체계 마련 필요성 증대

○ 해수면 상승, 이상파랑 증가 등 연안지역의 재난 위험요인 증가로 인해 기존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남

–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 해안가 침수피해('03.9)와 최근 태풍 '차바'로 인한 부산 마린시티 침수피해('16.9)와 같이 특히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연안도시에서 도시복원 관련 인프라 미비

○ 기후변화, 자원고갈, 금융위기 등 재난·재해의 정의가 폭넓어짐에 따라 다각적, 중·장기적 위협요인에 단편적 위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 제시가 필요

– 해양 및 도시분야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술 사업체 등의 긴밀한 조합에 의해 인간의 Smart Digital Life와 미래 재난·재해의 예측·대응이 가능한 해양도시 계획 및 기술요소 개발 필요

–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 발굴·추진과 함께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체계적 전략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추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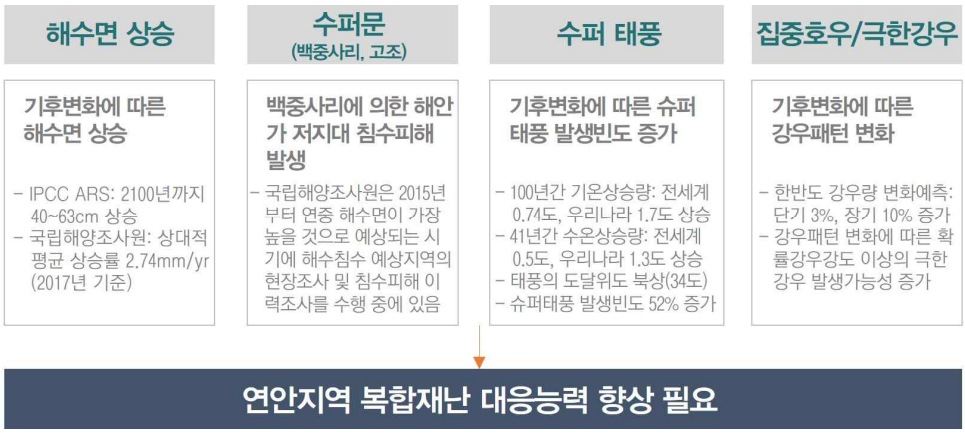

<그림 1-1>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재난·재해 발생 가능성

2. 연구개발 중요성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의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적 미래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우리나라도 기존 개별 주체 또는 기술단위 대신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시민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과 함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
- 특히 연안은 다양한 환경, 생태, 자원적 요소가 존재하며, 산업입지에 유리하고 레저·관광을 위한 거점이자 매력적인 거주지로 다방면의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공간
- 그러나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안지역은 특히 자연재해(태풍, 해일 등)에 취약해 이로부터 해양국토를 보전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 따라서 인간의 또 다른 삶의 터전인 해양공간에 대해 미래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모델 유형 개발이 시급하며, 연안지역(도시)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기법 및 기술요소, 설계기술 개발이 요구됨

○ 단편적 위기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 차원의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 전략과 함께 기술개발 연구와 실증사업이 필요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간의 Smart Digital Life와 환경·에너지를 고려하고 특히 연안지역(도시)의 특성상 자연재해에 대응 가능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자료의 축적과 체계적 활용을 전제로 한 계획기법과 기술개발 등이 요구됨
- 따라서 최소 10~20년 이상 장기적 전략 마련과 함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별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추진이 필요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목표

○ 본 연구개발은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해양재난안전 지능형모델 구축과 이를 위한 기술요소 개발'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초년도 사업임

○ 이를 위한 세부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시티, 해양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와 관련 기업 및 기술동향, 정책동향 등을 파악
- 활용가능한 기초정보 도출 및 체계화와 계량적·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한 우리나라 연안지역 유형 및 유형별 특성을 파악
  - 연안지역 관련 기존 통계자료, GIS공간자료 등 활용가능 자료 검토를 통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과 스폰지시티 개념 및 스마트 물순환시스템 적용기술 검토 등을 통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및 인프라 구축모형 제시
  - 스마트 그리드 기술적용 가능성 검토
  - 스폰지시티 개념 및 사례조사와 함께 지하 통합 물순환 시스템 적용기술 검토
  - 에너지 공급·소비의 최적화 및 자연재해 대응형 도시 인프라 구축모형 개발

2018년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인프라 및 공간모델 개발
세부 성과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스마트도시, 해양도시 관련 국내 · 외 동향	•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국내 · 외 사례정리 및 동향 분석 • (해양도시) 해양도시 글로벌 동향분석 및 국내현황 조사
우리나라 연안지역(도시) 기초정보 구축 및 체계화	• 연안지역(도시)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정리 • 활용가능 기초정보 도출 및 체계화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및 인프라 구축 모형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 • 자연재해 대응형 해양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모형 개발

<그림 1-2> 연구개발 목표 및 세부 성과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스마트시티, 해양도시 관련 국내·외 동향 관련

- 스마트시티 국내·외 사례정리 및 동향분석
  - 스마트시티 개념 정리
  - 스마트시티 국내·외 사례조사 및 동향분석
- 해양도시 글로벌 동향분석 및 국내현황 조사
  - 해양도시 글로벌 동향분석
  - 해양도시 조성 관련 국내현황 조사

○ 우리나라 연안지역(도시) 기초정보 구축 및 체계화

- 우리나라 연안지역(도시)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정리
  - 전체 연안지역(도시) 통계자료, GIS 공간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정리
  - 주요 연안지역(도시) 현장답사를 통한 기초자료 및 문헌자료 수집·정리
- 활용가능 기초정보 도출 및 체계화
  - 연안지역(도시) 특성분석을 위한 활용가능 기초자료 검토 및 분석지표 도출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보완정리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및 인프라 구축 모형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
  - '해양(연안)공간',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개념이 융합된 자연재해 대응형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
- 자연재해 대응형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모형 개발
  - 자연재해에 대응한 스펀지시티 개념과 스마트 물순환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그리드형 복합플랜트(열공급, 폐기물처리 등) 건설 가능성 검토
  - 에너지 공급·소비의 최적화 및 자연재해 대응형 도시 인프라 구축모형 개발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국외 정책동향
2. 국내 정책동향
3. 선진사례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국외 정책동향[1)]

▌미 국

○ 2014년까지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2010년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에 총 34억 달러를 투자

○ '15.9월, 'Smart Cities Initiative'를 선언, 총 1.6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계획 발표

- 'Smart Cities Initiative': 기후변화 대응, 교통혼잡 감소, 범죄 대응, 경제성장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 미국 교통국(USDOT: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 주관하여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인 'Smart City Challenge' 추진

- 'Smart City Challenge'는 기반시설 중 교통체계 개선안을 중심으로 참가 도시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우승 도시에게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콜럼버스는 2016년 Smart City Challenge에서 77개 도시들과 경쟁, 총 2라운드를 거쳐 최종 주승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USDOT로부터 4천만 달러, Vulcan Inc.로부터 1천만 달러를 지원받았음

▌중 국

○ 도시화 가속과 이에 따른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이 목표

○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스마트시티를 2013년부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 시작

○ 중앙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住建部 등) 주도로 '20년까지 1차적으로 전국 500개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82조 원)을 투자

1) 김갑성, 2018.03, "Smart City 정부정책방향" 발표자료, 인용 및 재정리.

▌일 본

○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역개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표

○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5년간(2010~2014) 총 8.4억 달러의 예산 투입

- '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오카 원전사고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추진

▌EU

○ 유럽의 노후된 도시들의 경쟁력 제고, 경기 활성화 도모, 지속적인 도시 환경 개선이 목표

○ European Commission(EU, 유럽집행위원회)가 에너지와 교통에 주안점을 둔 스마트시티 도입 촉진 정책을 총괄

○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한 'European Commission SET-Plan' 이니셔티브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성장 도모

▌인 도

○ '15년 20개 1차 대상도시를 선정하였고, 도로와 통신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목표

- 현재 인도는 스마트시티 국가개발 로드맵 구상 중에 있으며, 구도시형(Brown Field)과 신도시형(Green Field)으로 구분하여 추진
- 신도시형은 2009년부터 준비해 온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10~3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구도시형은 2015년 100개 도시를 선정하고, 1차적으로 20개 도시에 대한 도로와 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 나머지 80개 도시는 2016년 이후 2차에 걸쳐 40개씩 추진할 계획으로 1~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의 예산 외 지방정부 예산, 민간과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진행 계획

○ 이전 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부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 인도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

–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자금 지원

– 지방정부: 프로젝트 진행과 감독,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

※ 인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황

- 코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Kochi 지역의 부지에 사무용 빌딩과 주택단지, 엔터테인먼트 건물, 학교 등을 건립하고 IT파크 조성을 통해 IT 경제구역 조성
- 구지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 110여 개의 신규 빌딩 건립 및 도로, 교통, 통신, 전력, 수도 등 인프라 구축
- 나비–뭄바이 와이파이시티: 186㎞에 달하는 광학섬유 전선을 나비–뭄바이 전역에 설치하고 약 200개의 안테나 설치를 통해 유무선 인터넷망으로 도시 전체를 연결. 중앙 데이터통제센터에서 수도공급, 신호등 제어, 하수처리 시설 등을 운영
- 난데드–와갈라 스마트시티: 무선고속 데이터통신망으로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교육, 건강, 도시 관리·운영, 재난방재관리, 인터넷 사용 등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임

▌영 국

○ IoT 솔루션을 활용하여 교통, 의료, 에너지 등 분야 서비스 강화가 목표

○ 정부부문 400만 파운드 IoT 투자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영국의 IoT 역량 확대를 위한 「IoTUK 프로젝트」 추진

○ 2007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국가기술전략위원회(TSB)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자치단체 제안서 공모

▌싱가포르

○ '강화된 이동성', '더 나은 가정과 환경', '개선된 공공서비스', '건강과 웰–에이징', '경쟁력 있는 경제'의 다섯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싱가포르 인포컴 미디어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기반시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스마트국가 플랫폼 구성

※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 분야 및 내용

- 주　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에너지, 물 관리, 쓰레기 처리 등 적용
- 건　강: 싱가포르의 노년층 증가에 대비하여 센서 등을 활용하는 모니터링으로 특이사항 발생시 대처
- 교　통: 교통정보 수집, 교통신호 제어, 스마트 파킹, 차량 소유 및 사용·관리 등을 추진 중이며, 최근 자율주행을 활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실험 중
- 리빙랩: Smarter World라는 컨셉으로 제도적 규제 등을 완화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들을 테스트 및 상품화하는 리빙랩 사업을 추진
- 데이터개방: Trust and Transparency 컨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두고 동시에 IoT를 통한 새로운 정보와 기존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활용 강조, 투명한 정부 실현

▌캐나다

○ 정부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 제안서를 받고 우승지역에 대해 5천만 달러의 스마트시티 개발 지원금을 지원

– 대회의 절차 등은 미국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유사함

– 2018년 4월 제안서를 받고 2018년 여름 후보지를 발표한 후 2019년 상반기에 우승지역 발표

※ 캐나다 벤쿠버

- 캐나다 벤쿠버는 그리니스트 시티 2020 액션플랜(GCAP: Greenest City 2020 Action Plan)을 통해 벤쿠버를 지속가능하고 생태보존적인 스마트시티로 구현하는 것이 목표
  – 2011년 계획수립 이후 Food Scrap Collection Program, 농산물 시장 및 가든 증가, 3,200개의 녹지 관련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약 80%의 액션을 실행 완료
  – GCAP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20, ′40 단계별로 상이함
    ◦ 그린빌딩: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
    ◦ 기후와 재생가능성: 화석연료 의존성 감소, 에너지 재사용
    ◦ 녹색교통: 대중교통을 주요 이동수단으로 함(도보 및 자전거)
    ◦ 쓰레기제로: ′08년 대비 고체 쓰레기 50% 감소
    ◦ 자연접근성: 15만 그루의 나무 심기, 공원 및 그린웨이 접근 가능성 증대
    ◦ 깨끗한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음용수 공급
    ◦ 로컬푸드: 지역 식품 시스템의 국제적 표준화
    ◦ 깨끗한공기: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
    ◦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창출('11년 대비 녹색화 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두 배 이상 증가)
    ◦ 생태발자국감소: 탄소배출, 식품소비 등 생태발자국 감소 추진

2. 국내 정책동향[2)]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

○ ′00년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U-City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발전 없이 정체

- 우수한 ICT를 신도시 개발과 접목해 공공인프라를 확대한 성과는 있으나, 공공(LH) 주도의 일방향적 접근으로 민간 사업모델 발굴, 지속가능성 등에 한계
  - ′03년 판교, 송도, 동탄 등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 열풍과 함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시작, 이후 ′06.12월 정보통신부가 U-City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U-City 구축활성화기본계획′을 발표
  - ′09.11월 국토해양부는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2009~2013)′과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2014~2018)′을 발표
    * 제1차 계획은 U-City 태동 및 성장단계로 공공중심의 제도마련, 핵심기술 및 서비스 개발, 산업육성 지원 등 전반적인 기반조성 위주의 내용
    * 제2차 계획은 본격적인 U-City 확산과 ICT, 건설산업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순환 동반성장구조 확립에 집중
    * U-City 시범사업 추진으로 ′09~′13년 동안 15개 지자체에 231억 원 국비 지원
- 신도시 내 U-City 사업시 건설 관련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참여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산업 확장의 역량 부족
  * LH가 발주하는 통합운영센터 건설 및 S/W 보급을 위한 소규모 업체가 다수였으며, 대기업은 준공 후 통신 등 일부 서비스 보급에만 제한적으로 참여
- 5G,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관련 세계 최고수준의 ICT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접목 사례는 미흡
- 개별 주체, 기술단위의 좁은 시각에서 접근해 중앙부처·지자체·기업·시민을 아우르는 일관된 추진체계나 국가차원 전략 부재

○ 최근 정부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을 유도하고자 정부주도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시행과 함께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노력 중

---

2)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01,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인용 및 재정리.

– ‘15.6월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조성 공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 부산시와 SKT 컨소시엄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15~’17년까지 정부는 약 17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대·중소기업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계획안 발표

–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서울 2015’,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등

〈그림 2-1〉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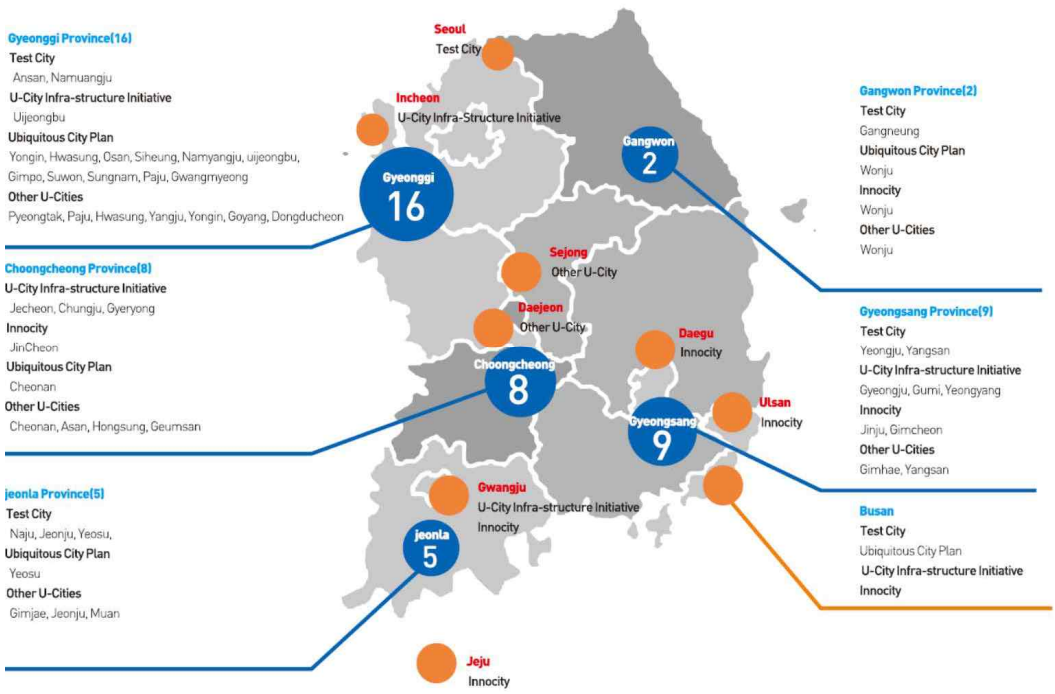

〈그림 2-2〉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시범도시 플랫폼으로 다양한 미래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인프라, 융합 신산업 서비스 등을 적극 반영

– (세종 5-1 생활권) 주거·행정·연구·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자족도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 예정
  • 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및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도입 등
  • 교통: C-ITS 등 스마트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
  • 생활안전: 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시스템 등 도입

– (부산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를 특징으로 워터시티 컨셉, 국제물류와 연계되는 스마트시티 구현
  • 수자원: 수열에너지 시스템 등 혁신기술 도입
  • 생활안전: 5G Free Wi-Fi 등을 접목한 스마트 키오스크 단지 구축
  • 기타: 에너지 Credit Zone, 드론 실증구역 및 R&D 밸리 조성 등

○ 스마트시티 정책추진 방향으로 "7대 혁신변화 도출"을 제시

– (가치지향) 기술중심 →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 중심" 도시
  • 도시가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

– (성장전략) 단순 도시개발/관리 → "혁신성장 동력" 육성 도시
  • 4차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을 도시에 접목·실증하여,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문제해결) 확장/인프라 → 효율/서비스 중심 "체감형" 도시
  • ICT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 수요자(시민)의 서비스 체감 관점에서 접근

– (접근전략) 획일적 접근 → 공간/기술/주체별 "맞춤형" 도시
  • 신도시와 기존도시(노후·쇠퇴)를 모두 아우르는 차별화된 접근 모색, 도시 여건에 따라 기술구현 수준,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결정

– (지속가능성) 단편/일회성 →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 스마트시티의 '도시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여, 기본 인프라 위에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개선되는 지속가능성 추구

– (개방성) 공급자/공공 주도 → 수요자/민간 참여의 "열린" 도시

• 민간·시민의 의견이 도시설계·운영에 반영되는 열린 도시를 지향

– (융합/협업) 개별부처·기술 → 정책/사업/기술 "융합·연계형" 도시

• 각 부처의 유관 정책·사업이 도시를 중심으로 융합·연계

▌중앙부처별 지차체 확산방안

○ (국토부) 지자체 선호도와 시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운영 통합플랫폼' 확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기술 연계 및 신규서비스도 지속 발굴

– BIS, 교통카드 등 ITS 분야에서의 성과도 타 지자체로 확산

*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 도시데이터 통합 관리 / 112·119연계 긴급구호 서비스 지원

○ (과정부)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 AI, IoT 등 혁신기술을 통한 ICT융합 도시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속 확대

– '19년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융합서비스 확대 적용

– 부산·고양 IoT 실증사업 성과를 타 지자체로 확산하고 교통, 환경, 안전 등 공공분야 新서비스 지속 발굴·검증 추진

* 스마트쓰레기통, 스마트가로등, 스마트파킹 등 26개 서비스 발굴·실증('15~'17)

○ (산업부) 스마트미터(AM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도시 내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확산

– 초기 시장형성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통해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나주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통한 성공모델 마련

*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혁신도시를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도시로 조성

○ (행안부)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우수 서비스도 확대 보급

– '22년까지 20개 분야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고, 지자체 스마트서비스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대기오염배출정보, 신재생에너지원 정보,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정보 등

○ (환경부) 수자원, 전기차 분야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지속 추진

– LID를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를 시범조성(광주광역시 등 5개 도시)하고 전국

확산, ICT를 활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전기차 보급과 관련하여 '17년 125개 지자체에 확산한 성과를 바탕으로 '22년까지 전기자동차 35만대, 충전기 1만대 구축 등 추진

▌국내 기업 동향

○ 국내 기업들도 주요 도시들과 협력하여 도시문제 해결·정보통신기술 적용으로 스마트시티 구현을 시도

○ ICT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및 인프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도시문제 해결방안으로 활용

- (SKT·KT·LGU+)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발 등 통합적으로 제공(SKT: 판교, KT: 강릉, LGU+: 고양)
- (삼성전자·LG전자) IoT기술과 전자제품을 연결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 (한전) I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그리드 등 서비스로 효율적 전력공급 및 그린 스마트시티 추진
- (LG CNS) 빌딩 자동화, 에너지 관리 등 스마트시티를 위한 다양한 기술 제공

3. 국내·외 사례

1) 스마트시티

(1) 일본: Four Major Smart Community Projects in Japan

○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2010년 1월 기술실증 사업인 '차세대 에너지·사회 시스템(스마트 커뮤니티)' 실증사업으로 스마트 시티 구축사업을 공모

○ 2010년 4월, 제안에 응모한 도시 중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아이치현 토요타시, 교토부 게이한나 학연도시,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4개 도시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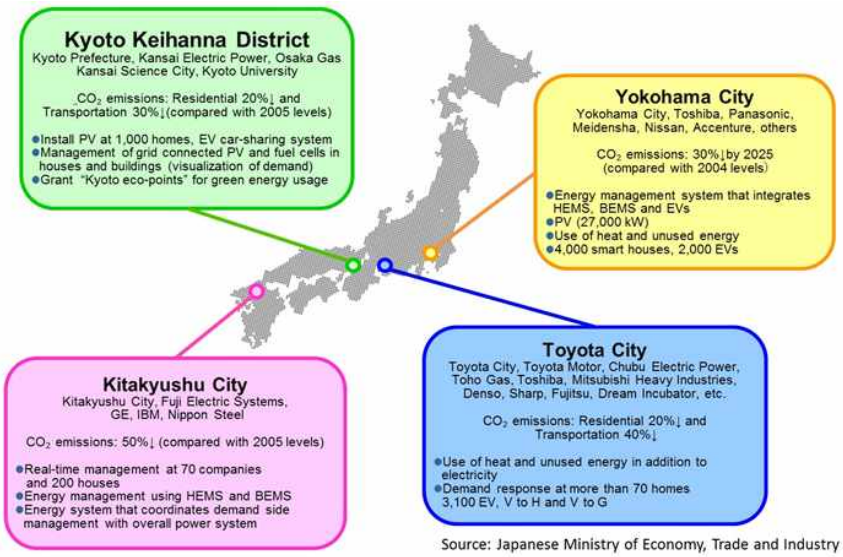

Sourc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Yokohama Smart City Project

○ 개 요

- 요코하마시는 Yokohama Smart City Project(YSCP)를 통해 2010년부터 5년간 요코하마 3개 도시지역(Minatomirai 21 Area, Kohoku New Town, Yokohama Green Valley)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약 435㎢에 이르는 지역으로 확대 계획을 세움
- 건물을 포함한 지역 내 에너지 관리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운송 시스템을 도입

- 이를 위해 주택 및 빌딩, 에너지 저장시설과 같은 각각의 EMS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달성하는 CMS(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도입
  - 20%의 에너지 절감 달성을 위해 4,000가구의 EMS 도입
  - 최고 20%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통제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업용 건물의 EMS
  - 공장을 위한 EMS
- 또한 2,000대의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를 제공하고, 249개소의 태양광 발전소, 2개소의 풍력 발전소, 3개소의 수력 발전소, 6개소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구축함

◯ 사업개요

프로젝트 참여자	The City of Yokohama, Accenture Japan Ltd, Tokyo Gas Co., Ltd,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oshiba Corporation, Nissan Motor Co., Ltd., Panasonic Corporation, Meidensha Corporation and others
지 역	The Minato Mirai 21 area, the Kohoku New Town area, the Yokohama Green Valley area (Kanazawa Ward) and others
규 모	인구: 420,000명(170,000세대), 면적: 60㎢, 자동차: 150,000대
목 표	+27 MW PV, 4,000 HEMS houses, 2,000 EVs, −64,000t CO2
예 산	74 billion JPY

◯ 3개 지역으로 구성

- 주거지역: Kohoku New Town
  - 1960년대 개발된 요코하마의 주거지역
  - 저층 주택 및 쇼핑센터가 위치한 외곽 주거지역
- 도시지역: Minatomirai 21 Area
  - 고층의 중심지역
  - 고층의 업무빌딩, 고층의 아파트, 국제컨벤션센터
- 산업지역: Yokohama Green Valley
  - 매립지에 건축된 산업용도의 재개발지역
  - 요코하마의 지역공장, 놀이공원, 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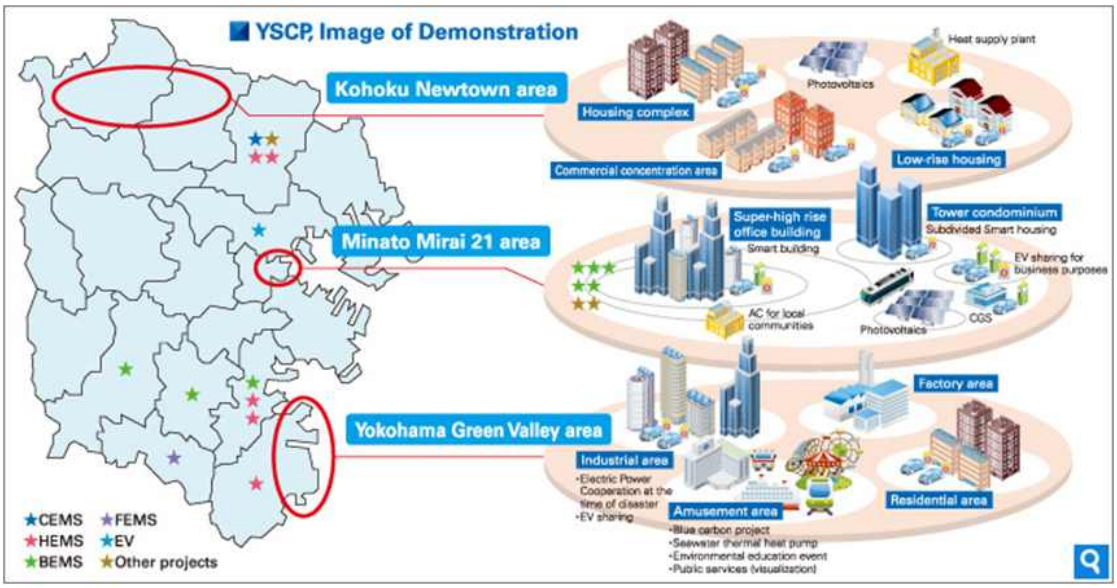

자료: Yokohama Smart City Project, Climate Change Policy Headquarters, City of Yokohama

<그림 2-3> 요코하마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및 주요 참여업체

자료: https://www.greentechmedia.com/articles/read/the-fast-and-furious-japans-race-to-energy-management

○ 에너지관리 시스템

- 2014년 말까지의 목표: PV(태양광) 27MW / HEMS 4,000units / 전기자동차 2,0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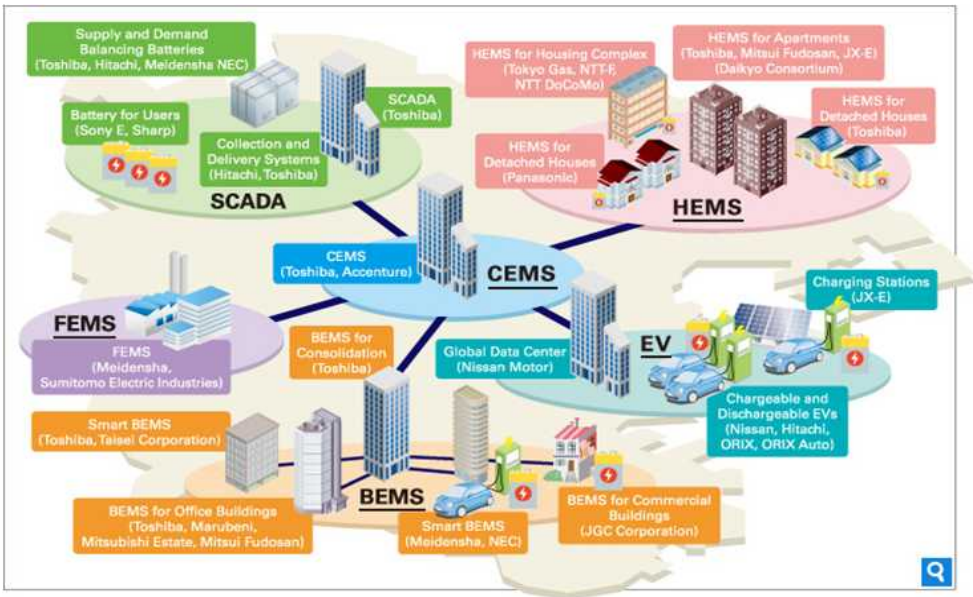

자료: Yokohama Smart City Project, Climate Change Policy Headquarters, City of Yokohama

▌Kitakyushu Smart Community Creation Project

○ 사업개요

실행주체	Kitakyushu Smart Community Council(Kitakyushu, 70여개 회사 및 조직)
지 역	Higashida 지역, Yahata-Higashi area (약 1.2㎢)
규 모	인구: 600명(200가구), 면적 1.2㎢, 자동차: 300대
목 표	+5MW PV(private homes, and solar parks), +30kW wind energy, +300 W fuel cells, +400kW geothermal, −34,000t CO2
예 산	16.3 billion JPY

자료: KITAKYUSHU SMART COMMUNITY, Kitakyushu Smart Community Creation Project, Toyozo Sasakura, Fuji Electric Co. Ltd

○ 사업목적

- 일본 근대 제철의 발상지 야하타 히가시지구에 지역 모든 시민·사업자의 참여 아래 지역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현
- 수요의 평준화로 CO_2 배출량이 최소화되는 계통 전원 운용
- CO_2 목표 감축량 50%, 재생에너지 도입량 10%
- 재생에너지의 최대 활용으로 CO_2 배출량의 최소화가 되는 계통 전원 운용

○ 사업특성

- 대형 발전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전력공급 시스템
- 공장 폐열을 포함한 미활용 에너지의 실용화
- 수소에너지의 사용 (Kitakyushu Hydrogen Town)
- 사용자가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스마트 미터링 및 수요 대응에 대한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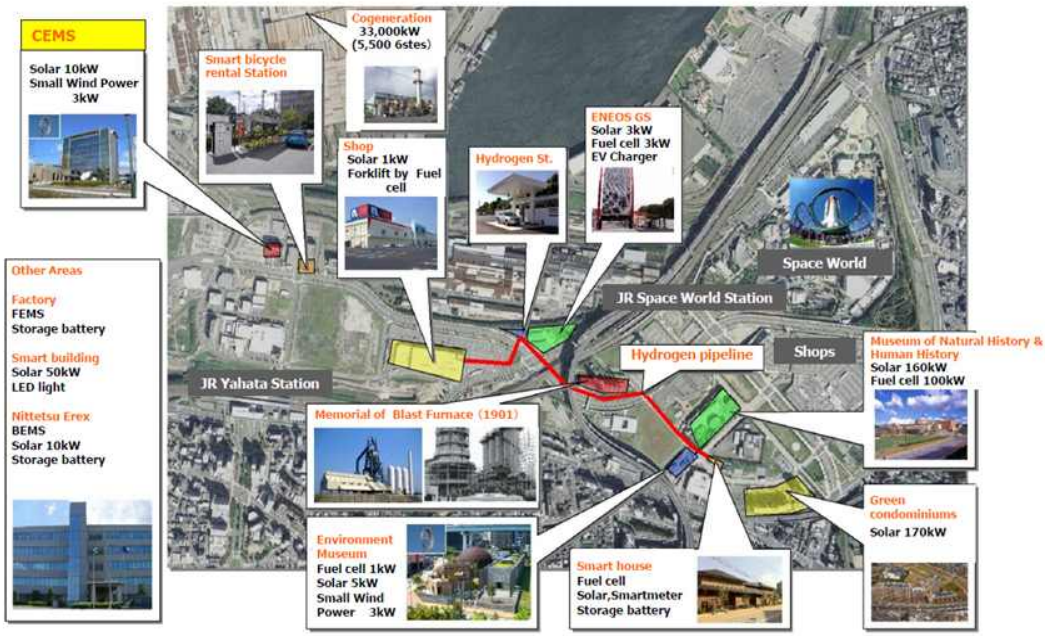

<그림 2-4> Kitakyushu Smart Community Creation Project 계획지역 이미지

자료: Smart Communty Demonstration in Kitakyushu, Yosuke NAKANISHI, Corporate R&D Headquarters, Fuji Electric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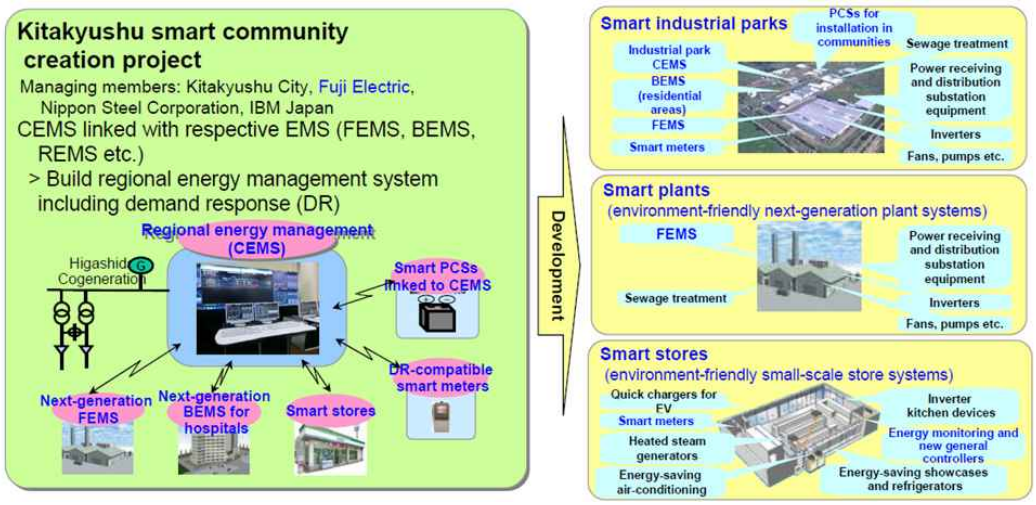

<그림 2-5> Kitakyushu Smart Community Creation Project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료: Kitakyushu smart commnity creation project, Fuji Elecric Co., Ltd.

▌Toyota City

◯ 사업개요

실행주체	Toyota Motor, DEnso Corp., Chubu Electric Power Co., Toho Gas, Sharp, Fujitsu
규 모	인구: 420,000명(160,000가구), 면적 918㎢, 자동차: 370,000대
목 표	61.2% houses with renewable energies, ca. 230 Smart Homes, −265,000t CO2(−30%)
예 산	22.72 billion JPY

◯ 사업방향 및 특성

- 도요타시는 Eco-model City를 구축하기 위해 주거지역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 저탄소 교통 시스템의 구축, 상업과 공공시설에서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 도시 중심의 실증단지 등을 계획

◯ 사업내용

- 가정 내에서의 에너지 활용을 위해 다양한 기기 도입 및 차세대 자동차 탑재 전지 활용과 HEMS 도입
-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저탄소 교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차세대 전기자동차 도입 촉진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저탄소 교통시스템을 적용한 차세대 자동차 3,100대를 보급해 충전시스템 및 EDMS를 연계하여 충전량의 피크전력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둠

– 다양한 친환경 학습 및 주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지원에 투자하여 라이프스타일 변혁과 인센티브 효과 검증

– 실증단지로 개별주택형 67세대의 신규 주택에 전력 수요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실증함으로써 전기 데이터 수집 및 최적 충전지 설치에 대해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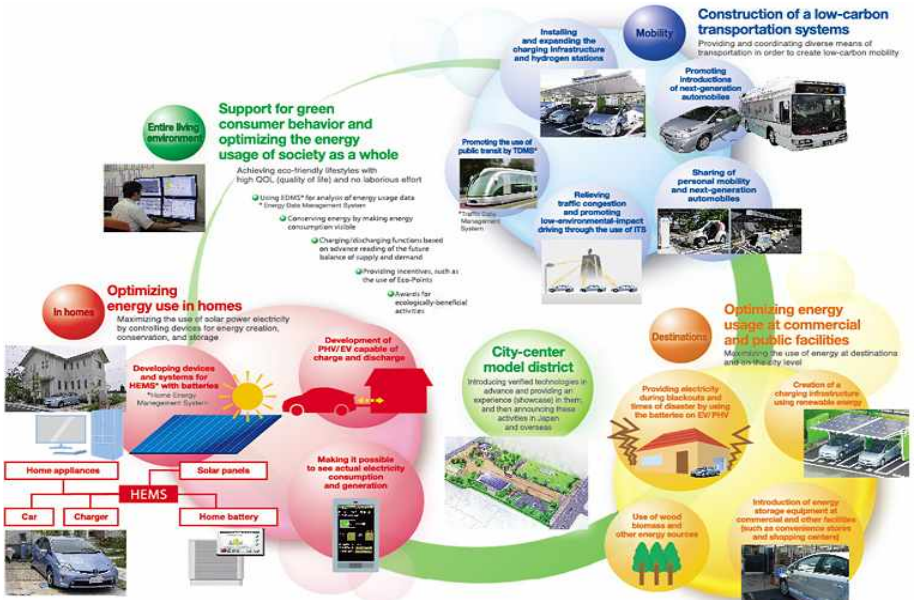

자료: https://www.toyota-global.com/innovation/intelligent_transport_systems/world_congress/2012vienna/low_carbon_societ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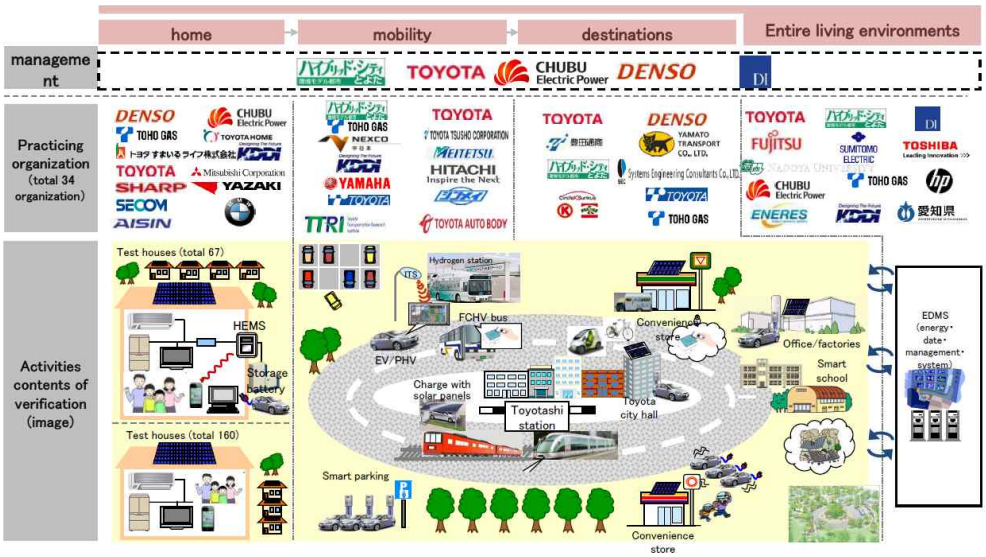

<그림 2-6> Toyota city low-carbon society verification project Promotion Council

자료: Outline and outcome from the advanced technology verification in Toyota City, OTA Toshihiko

▌도요타 에코풀타운(Toyota Ecoful Town)

- ′도요타 에코풀타운′은 일본 도요타시 소재지에 도요타 업체가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 총 67가구 규모로 추진한 스마트 실증단지로, 2012년 5월에 준공함
- 단지 내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파크에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와 전동바이크, 전기자동차가 운영되고 있음
- 단지 내 스마트하우스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평균 55%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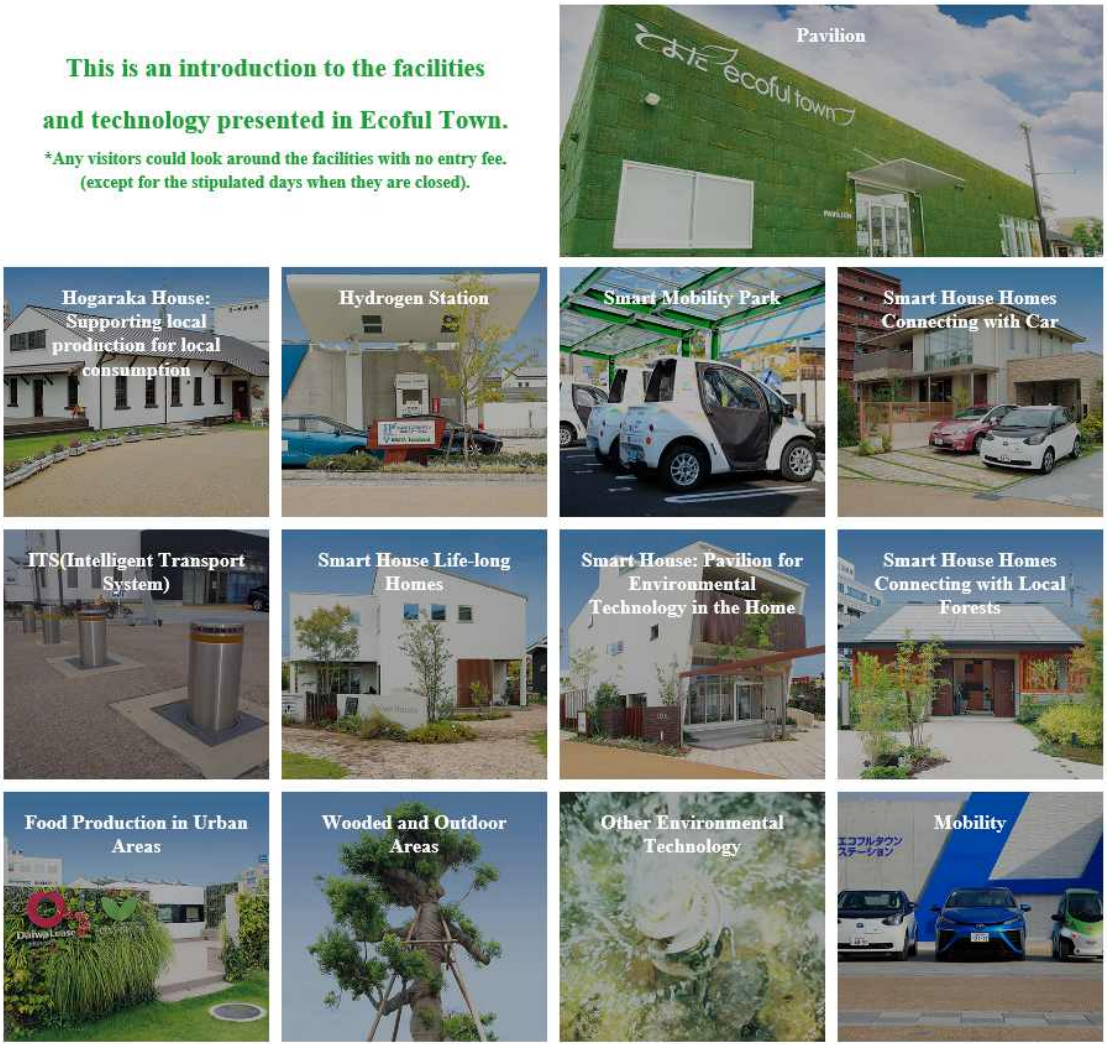

〈그림 2-7〉 도요타 에코풀타운 시설

자료: https://toyota-ecofultown.com/en/

<그림 2-8> 도요타 에코풀타운 계획안

자료: toyota ecoful town pamphlet

자료: https://toyota-ecofultown.com/en/

(2) 일본: 후지사와시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Fujisawa Sustainable Smart Town)

○ 개 요

- 위 치: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스찌도모토마치, 6-4-1
- 면 적: 19㏊
- 용 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익시설
- 계획인구: 3천 명(1천 세대)
- 사업비: 약 600억 엔

자료: http://www.rippleethiopia.org/panasonic-has-built-an-ecological-super-city-in-japan/1090/

○ 특 성

- '후지사와시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Fujisawa SST)'은 민간(파나소닉과 8개의 파터너사)과 공공(후지사와시)의 공동 프로젝트임
- 개발컨셉은 에너지, 보안, 이동성, 의료 및 지역사회와 같이 실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5가지 주요 서비스 제공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마을을 개발하는 것임
  - 에너지 부문에서는 LED 조명, 태양열 패널, 축전지, 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동성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전력보조자전거를 수단으로 하는 자동차 및 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제공함
  - 의료서비스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보안 솔루션 및 포괄적 의

료서비스를 제공함

○ 후지사와 모델

– 후지사와 SST는 거주자의 삶을 기본으로 타운을 설계하였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9> 후지사와 SST 모델

자료: https://fujisawasst.com/EN/project/

○ 조닝 및 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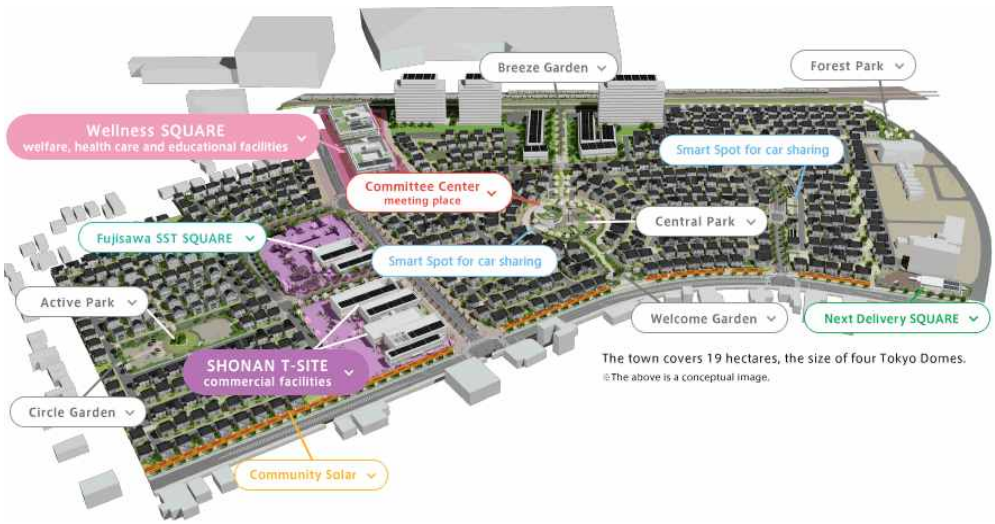

<그림 2-10> 후지사와 SST 조닝 및 시설계획

자료: https://fujisawasst.com/EN/project/

○ 토지이용계획

자료:
https://inhabitat.com/fujisawa-smart-town-planned-for-japan-to-be-most-advanced-eco-city-in-the-world/

○ 후지사와 SST에 참가를 표명한 8개의 사업 파트너

회사명	담당 부문
㈜엑센츄어	• 스마트타운 구상 수립 및 서비스모델 기획 • 세계의 트렌드를 고려한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 지원 • 각국의 스마트시티/스마트그리드 지원 실적을 기반으로 한 해외마케팅 지원
㈜오릭스	• 도시 전체의 가치 향상, 친환경·안심·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원스톱서비스 사업 검토 • 이동성 공유사업을 통한 저탄소도시 만들기
㈜일본설계	• 새로운 에너지기기 등의 최적 도입 계획 및 공간디자인 • 스마트타운에 어울리는 조경디자인 제안 • 스마트타운 유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 스마트타운 평가지표(환경부동산 가치)의 설계 • 후지사와 SST 전용 친환경주택용 대출상품 기획 • 주민들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 지원을 위한 타운카드 결제·포인트 관리
㈜도쿄가스	• 가정용 연료전지인 '에너지팜(energy farm)'의 최신기기 도입 • 에너지팜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 제안 •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추진
㈜PANA 홈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개발에 관한 기반 정비 • 택지·주택 분양사업 참여
㈜미쓰이부동산·미쓰이부동산 레지던스	• 타운 계획·설계·개발 원칙의 제안 • 타운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사업 구상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개발에 관한 기반 정비 • 택지·주택 분양사업 참여 • 타운 계획·설계·개발 원칙의 제안 • 타운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사업 구상
㈜미쓰이물산	•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프라 정비 및 가구·부동산 개발 • 해외 스마트시티의 동향 등을 근거로 에너지 관리 서비스

자료: 임상연(2011), 후지사와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구상, 국토연구원

○ 단지 이미지

자료: https://fujisawasst.com/EN/photo/

(3) 일본: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Kashiwanoha Smart City)

○ 개 요

- 대상지: 카시와노하 캠퍼스
- 면 적: 약 12.7㎢
- 사업주체: 미쓰이부동산, 스마트시티기획단
- 사업기간: 2005.10. ~ 2014.05.
- 사업비: 약 1,000억 엔
- 용도: 주거(약 2,000호), 상업시설, 오피스, 호텔

<그림 2-11>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전경

자료: http://www.hitachi.co.kr/case_studies/smartcity_kashiwanoha/index.html

○ 사업추진 방향 및 목적

-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민(미쓰이 부동산), 관(카시와시), 학(도쿄대, 치바대)

이 공동으로 참여

– 지구환경 및 에너지, 초고령 사회,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창조도시의 3개 키워드를 주제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실현을 목표로 함

- 환경공생도시(협의의 스마트시티): 지역의 에너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창조, 에너지와 食의 自産自消, 저탄소형 새로운 도시교류, 재해시 라이프라인 확보
- 건강장수도시: 지역연계에 의한 병원, 고령자의 적극적 사회참여, ICT를 활용한 다세대간 교류
- 신산업창조도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지원, 그린경제를 위한 신산업, 국제적 벤처커뮤니티

〈그림 2-12〉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3가지 키워드

자료: https://www.kashiwanoha-smartcity.com/en/concept/whatssmartcity.html

– 스마트시티는 '카시와노하 캠퍼스 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호텔용 단지, 주거용 단지, 상업용 오피스 단지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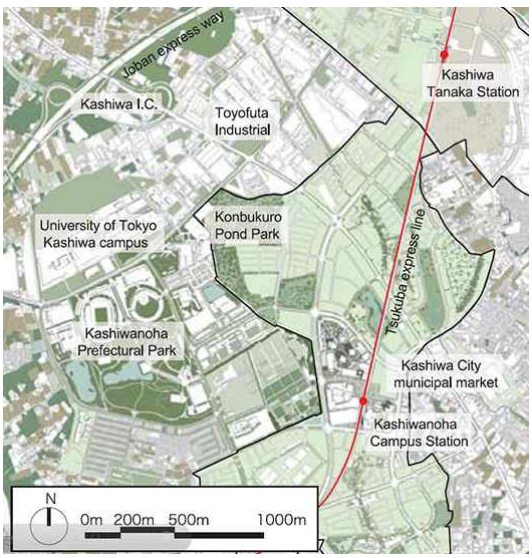

〈그림 2-13〉 카시와노하 국제 캠퍼스타운 구상

자료: http://www.udck.jp/en/

○ 특 성

– 공공,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주체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도시 개발 플랫폼을 추진

– 마을재생과 타운의 운영을 관리하는 UDCK(Urban Design Center Kashiwanoha) 설립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미래도시에 대해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

○ 사업내용

– 도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시와노하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AEMS)'를 운영

• 스마트센터(카시와노하 AEMS)를 통해 에너지 정보를 시각화하고, 개개인의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절약 지표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현함

<그림 2-14>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용, 감시, 제어하는 AEMS

자료: http://www.hitachi.co.kr/case_studies/smartcity_kashiwanoha/index.html

– 2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및 가스 발전 시스템 운영

– 주거용 단지와 상업용 단지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2005년 도쿄지역 전체 평균 기준으로 40%까지 감소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rban Design Center Kashiwanoha)

○ 비 전

- 도시디자인센터(Urban Design Center, UDC)는 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을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기업, 학계 간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
  - 공 공: 정부, 비영리단체(NPO)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 민간기업: 시민,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업 등으로 지역사회의 활력과 매력을 향상시킴
  - 학 계: 대학, 전문가 등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기반으로 선진적인 활동을 수행함
-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는 일본에서 최초의 도시디자인센터로 2006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Kitakawa Takeru가 제안한 지방정부, 민간단체, 대학이 참여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체계로 대중의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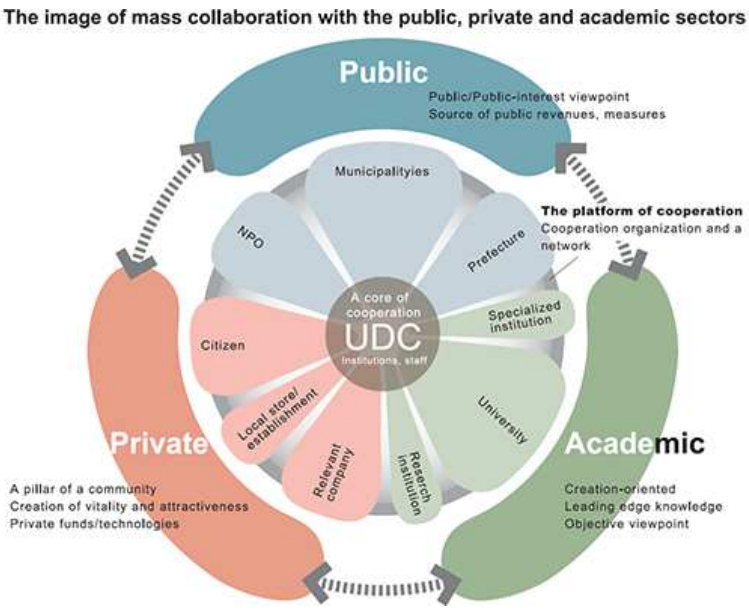

자료: http://www.udck.jp/en/about/002443.html

○ 목적 및 기능

-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는 크게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해 '조사, 연구 및 제안'을 수행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실제 개발의 '조정과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는 코디네이터,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정보 제공'

의 3가지 기능을 가짐

-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 활동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연구 및 제안: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제안
  - 데모 실험 및 비즈니스 창출: 최첨단 지식·기술과 커뮤니티 간 지원 협력
  - 디자인 관리: 고품질 공간디자인을 위한 조정 및 지원
  - 교류 및 학습: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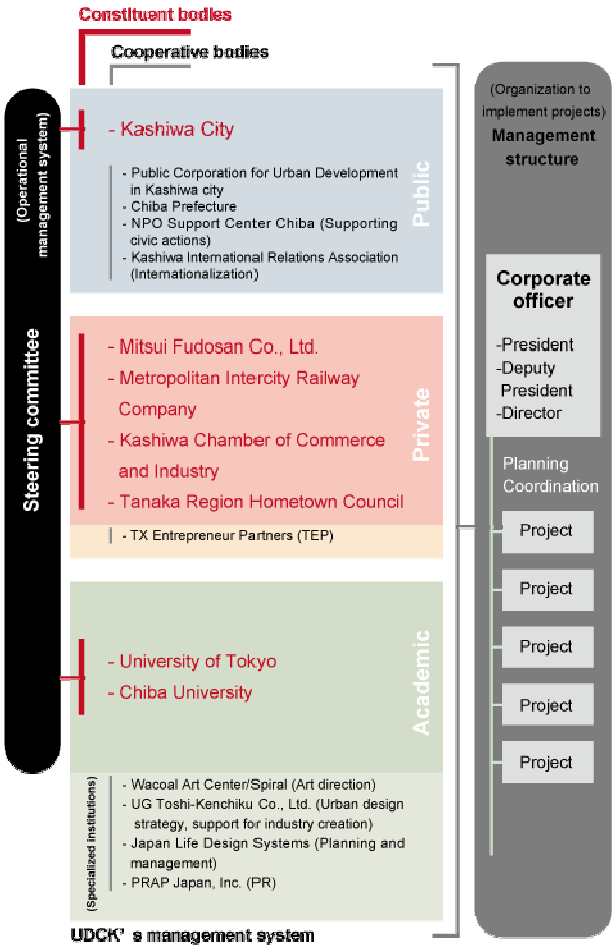

<그림 2-15>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 운영시스템

자료: http://www.udck.jp/en/about/002441.html

(4) 일본: 후나바시 모리노시티 프로젝트

○ 개 요

- 위 치: KIta-Honcho 1-chome, Funabashi City, Chiba Prefecture
- 대지면적: 17.6ha

– 시 설: 1,497 Condominium Units, 42 독립주택, 상업시설, 병원, 보육시설
– 사업시행: Nomura Real estate Development Co., Ltd. Mitsubishi Corporation
– 공사기간: 2011~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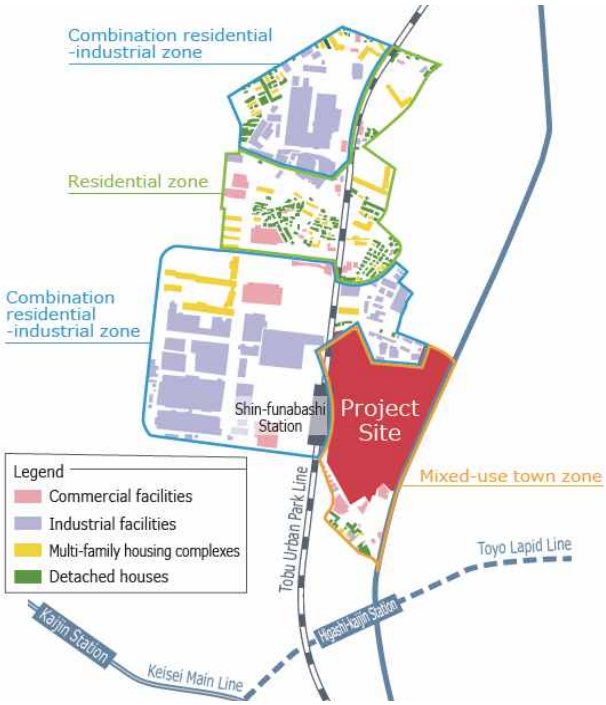

〈그림 2-16〉 후나바시 모리노시티 Conceptual image of the town blocks development plan

자료: https://www.proud-web.jp/will/machi/funabashi/en/

○ 목 표

– 후나바시 모리노시티는 후나바시시에 의한 지구계획에 의거, 17ha의 공장부지를 재개발한 프로젝트로, 모든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

○ 'Smart & Share Town' 개념

– 후나바시 모리노시티 개발의 비전은 'Smart & Share Town'로 첨단기술과 IT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임
  • 'Smart'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함
  • 'Share'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기회를 표현하며, 이를 통해 서로간의 유대감을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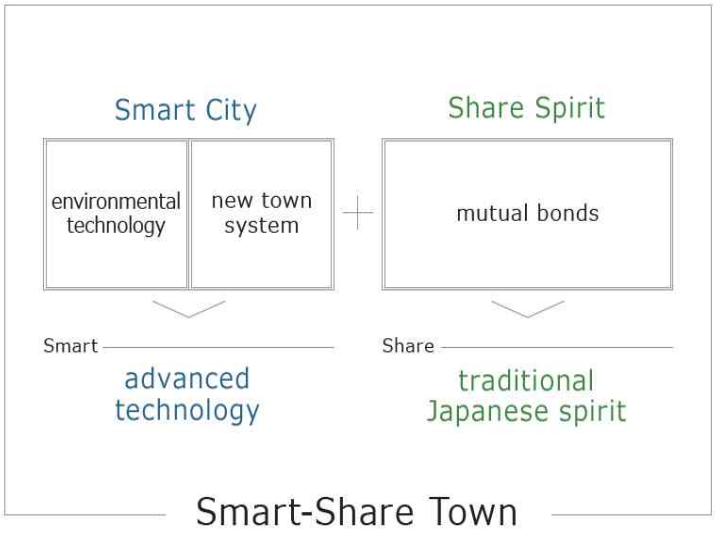

<그림 2-17> 후나바시 모리노시티의 Smart & Share Town 개념

자료: https://www.proud-web.jp/will/machi/funabashi/en/

○ 5가지 공유행위

- 후나바시 모리노시티는 지역사회에 편리함과 편안함,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Town을 형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연환경, 자연이 있는 지구의 공유 등 5가지 공유활동을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하고 있음

<그림 2-18> 후나바시 모리노시티의 5가지 공유행위

자료: https://www.proud-web.jp/will/machi/funabashi/en/

○ 사업내용

– '노무라부동산'과 '미츠비시상사'가 공동으로 환경배려형 마찌쯔쿠리를 추진

– 에너지와 공간을 공유하면서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실현하고자 선진 환경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저탄소형 도시기반을 구축함

• 저탄소 마찌쯔쿠리 계획 하에 이온몰 후나바시점과 아파트단지를 공동개발함

<그림 2-19> 후나바시 모리노시티 마스터플랜

자료: https://www.proud-web.jp/will/machi/funabashi/en/

(5)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 개 요

–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극적임

– 2014년 8월,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함

•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은 ICT를 활용해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국가차원으로 확대한 것

•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전담조직인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 오피스(Smart Nation Program Office, SNPO)'을 신설함

- 이후 2017년 5월, 기존 SNPO를 비롯해 총리실의 Digital Government Office, 재무부의 Digital Government Directorate of Finance, 정보통신부의 MCI, 실행조직인 Government Technology Agency(Govtech)의 5개 기관을 총리실(PMO) 산하의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SNDGO)로 통합
- SNDGO는 주요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 공공분야의 장기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기업의 참여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국가차원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함. 이를 위해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디자인기술대학 뿐만 아니라 MIT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투자기업인 싱텔(Singftel)과 IBM 등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 오픈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Dataset을 온라인 포털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엑세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시민중심 솔루션에 참여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새로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 영역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 및 혁신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에는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0(RIE 2020) 및 AI Singapore가 포함되어 있음

○ 사업내용

–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 자립섬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풍력 솔루션 등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세마카우(Semakau) 섬을 에너지 자립형 마이크로 아일랜드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

– 심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증진을 위한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둠

- 버스 도착시간 뿐만 아니라 버스의 승객 혼잡도 등 각종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마이트랜스포트닷에스지(MytransportSG)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

– 2016년 8월, 세계 최초로 일반인을 태운 자율주행 택시의 시험 운행을 시작

- 싱가포르 정부와 미국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누토노미(nuTonomy)는 원노스 등 일부지역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함
- 이를 통해 자가용 수를 90만대에서 30만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정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물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질향상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수질측정 로봇인 뉴스완(NUSwan)을 개발
- 이는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수질측정도 가능하여 정부가 수질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싱가포르는 통합시스템을 3D 가상화로 구축하는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를 통해 홍수, 지진, 화재 등 재난관리와 교통시스템 시뮬레이션, 지형변화로 일어나는 주변 환경적 영향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도시의 개발 및 관리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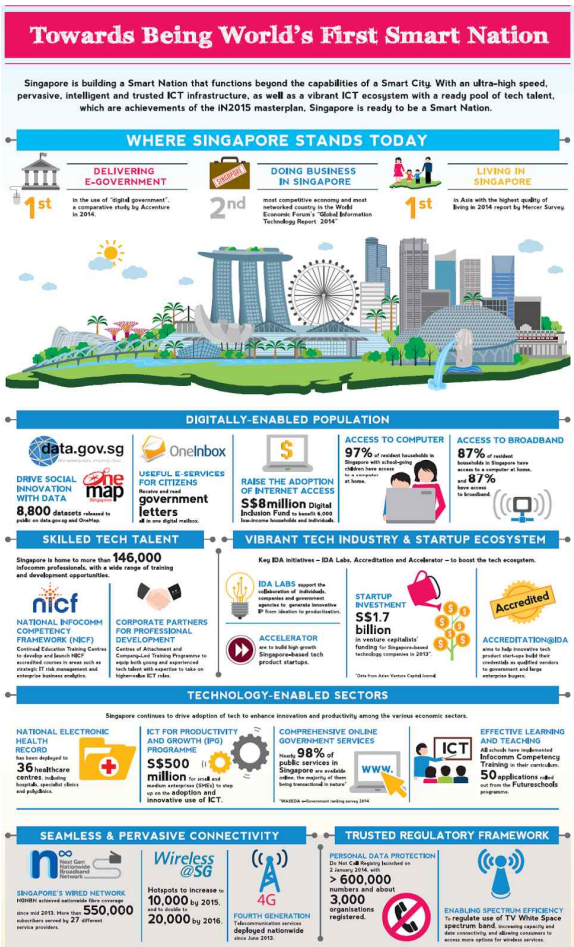

<그림 2-20> 싱가포르 스마트시티의 Building Blocks of Smart Nation Vision

자료: Towards Being the World's First Smartest Nation, iDA

(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 개 요

– 암스테르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9년부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CO_2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70여개 이상 참여기관 간 파트너쉽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대신 개방형 프로젝트 방식을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 일반시민이나 기업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고, 채택된 프로젝트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한 뒤 결과에 따라 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함

자료: https://amsterdamsmartcity.com/p/about

○ 사업내용

–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Infrastructure & Technology(기반시설 & 기술), Energy, Water & Waste(에너지, 물 & 폐기물), Mobility(교통), Circular City(자원순환 도시), Governance & Education(거버넌스 & 교육), Citizens & Living(시민 & 생활) 등 6가지 테마로 구분되어 진행

〈그림 2-21〉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테마

자료: Amsterdam Smart City, Rogier Havelar

<그림 2-22>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기업

자료: Amsterdam Smart City, Rogier Havelar

<표 2-1>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안)

구 분	프로젝트명	내 용	이미지	참여기관
Infrastructure & Technology	IoT living Lab	암스테르담의 IoT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컨 및 LoRa 활성화 센서 비컨을 위한 개방형 및 공용 테스트 환경		
Energy, Water & Waste	City-zen: Virtual Power Plant	가정용 배터리를 통한 잉여 태양광 에너지의 저장 및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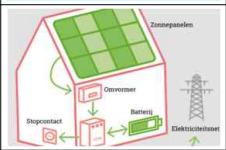	-
Mobility	Vehicle2-Grid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자동차 사용		
Circular City	Urban Factory – AUAS (HvA)	도시쓰레기에서 제품으로 순환		-
Governance & Education	Startup in Residence	암스테르담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국제적인 신생기업들을 초청		
Citizens & Living	Smart Light	원격조작 및 센서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보안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실현		

(7) 국내: 경기도 광명시흥 TV 에너지 테스트베드

○ 위치 및 규모

– 위　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2015.04월 해제) 내 남부 경계부 일원

– 규　모: 약 62만 평

- 일반산업단지 30만 평
- 첨단산업단지 15만 평
- 유통단지 9만 평(LH)
- 주거단지 8만 평(경기도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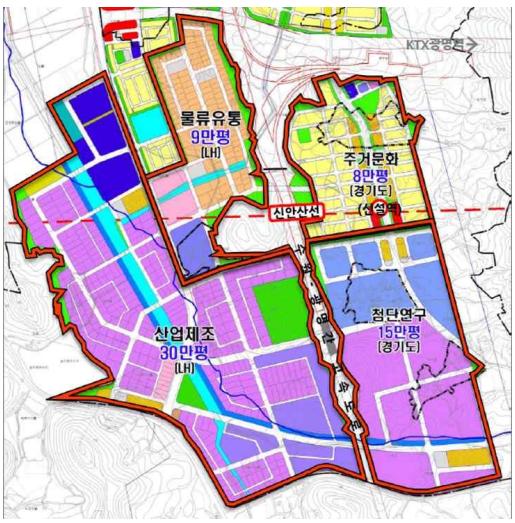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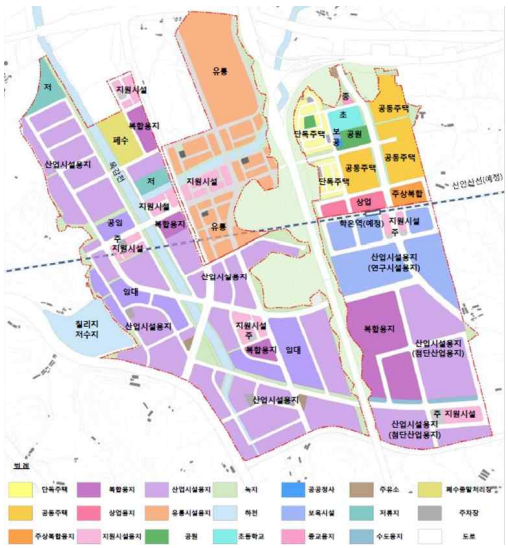

<그림 2-23> 경기도 광명시흥 TV 기 계획안(현황)

자료: 4차 산업혁명 경기도 모델 구축 및 실행계획 연구, 이정훈 외(2018.02)

○ 기본방향

– ′에너지 융복합 솔루션을 통한 에너지 자립산단 조성′,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에너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제로에너지 테스트베드』구축

- 스마트에너지 첨단산업단지: 스마트공장 건립을 통한 에너지 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
- 제로에너지 시범주거단지: 에너지 통합 솔루션 구축을 통한 제로에너지 시범주거단지 조성
- 공공지원센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센터 조성(에너지통합관리센터 설치)
- 스마트 교통시스템: 단지 내부순환 및 광명역 연계를 위한 스마트대중교통시스템, 스마트주차장 등 도입
- 제로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단지 내 에너지 거래를 통한 제로에너지 타운 구현

○ 구축방안

– 스마트에너지 첨단산업단지

-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건립을 통한 에너지 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장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등 구현(FEMS, ESS, 태양광, 에너지IoT 등)
-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태양광, 에너지IoT 등을 통한 공장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현

→ 공장의 에너지 절감과 성능 최적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관리 단위 세분화 및 전력 peak 사전대응으로 에너지 관리비용 절감, 전력사용량 통계 관리로 효율적 설비관리체계 구축

- 전기차 운영, 전기차 충전소 등 설치

사례: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 건설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기지
– LG 계열사들이 가진 첨단 에너지 솔루션을 적용해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감형 R&D 기지로 건설
– 건물 옥상에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설치,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결합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도입, ESS 설치,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절감형 건축자재 적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로 운용 등

• 4차 산업혁명 관련 에너지, 첨단부품, 드론, 로봇 등 관련기업 유치

– 제로에너지 시범주거단지

• 주요내용: 단지 자체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통합솔루션 구축을 통한 제로에너지 시범주거단지 조성, 스마트홈 주택(단독/공동주택), Smart V2H, 에너지 자립학교, 에너지 혁신공원 등 도입

① 스마트홈 주택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에너지 IoT, ESS, HEMS(홈에너지관리시스템)를 연계한 스마트홈 통합솔루션 구축

• Smart V2H 도입: 전기차, 태양광 발전, HEMS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기 사용 및 잉여전력 판매로 에너지 프로슈머 구현

• 단지 내 스마트주차장 조성, 전기차 충전소 등

사례: 후지사와시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 민간(파나소닉과 8개 파트너 기업)과 공공(후지사와시) 부문의 공동 프로젝트로, 약 1,000가구를 위한 스마트타운 건설

– 개발컨셉은 에너지, 보안, 이동성, 의료 및 지역사회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5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

– 에너지 서비스에는 LED조명, 태양열 패널, 축전지, 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7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左): http://one-t.jp/products/ev_charge/mitsubishi_electric/mitsubishi_smart_v2h.html

② 에너지 자립학교

•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자체 생산하여

사례: Kathleen Grimm School

– 뉴욕시 최초의 에너지 제로 학교 건축물

– 충분한 채광과 옥상 및 남쪽 파사드에 설치된 광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뜰 조성 및 매스를 최적화함

– 고성능 빌딩 외피, 고효율 조명장치, 저에너지 주방설비, 온실 및 채소밭, 에너지회수 및 수요조절 환기장치, 온수를 위한 태양열 시스템 등 설치

자료: https://www.archdaily.com/288485/som-breaks-ground-on-new-yorks-first-net-zero-energy-school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학교 조성.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활용

③ 에너지 혁신공원

- 신재생에너지 기반 공원 조성
- 태양광 발전설비, ESS, 스마트벤치,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체험 놀이시설 등 조성

사례: 다산 에너지혁신공원 시범사업

– 다산신도시 체육공원 1호 내 노외주차장 일대에 에너지생산시설(태양광)과 에너지효율 개선시설(ESS, EMS), 주민편익시설(솔라테이블),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홍보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자료: 다산 에너지혁신공원 시범사업 공모지침서, 경기도시공사(2017.02)

– 공공지원센터

- 주요내용: 창업/기업 지원 및 산업간 협력 교류를 위한 공공지원센터 조성, 제로에너지 및 IoT 기술 등이 적용된 스마트빌딩으로 건립, 단지 전체의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에너지통합관리센터 설치
- 산업간 협력 교류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지원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 산업혁신 및 융복합, 기업육성, 근로자복지 지원기능

-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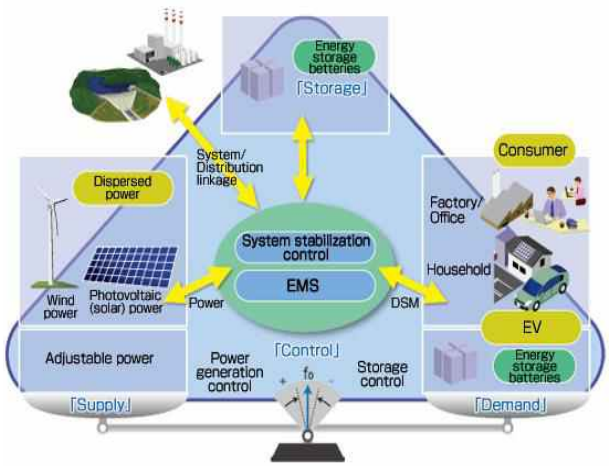

〈그림 2-24〉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모델

자료: http://www.hitachi.com/businesses/infrastructure/product_site/cems/management.html

- 에너지통합관리센터 설치
- 태양광, 에너지IoT,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ESS 등 도입
- 직류 인증 테스트베드 등 에너지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

사례: 세종선관위 청사

– 공공건축물로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 단열 강화, 차양일체형 외피 등 최신 패시브(Passive) 건축기술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열·태양열·태양광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활용한 액티브(Active)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비율 52.8%를 달성

자료: '세종선관위 청사, 국내 1호 제로에너지 건축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7.06)

– 스마트 교통시스템

- 주요내용: 단지 내부순환 및 광명역 연계를 위한 스마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스마트주차장(전기차 충전소 등) 조성, 전기자전거 대여소, 전기차 카셰어링 시스템 구축
- 단지 내부를 순환하는 전기차 순환버스 운영
- 광명역을 연계하는 전기차 운영으로 근로자 및 방문자 접근 편의성 확보
- 스마트주차장 조성(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발전설비, ESS 등 설치)
- 전기자전거 대여소, 전기차 카셰어링 시스템 구축
-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노선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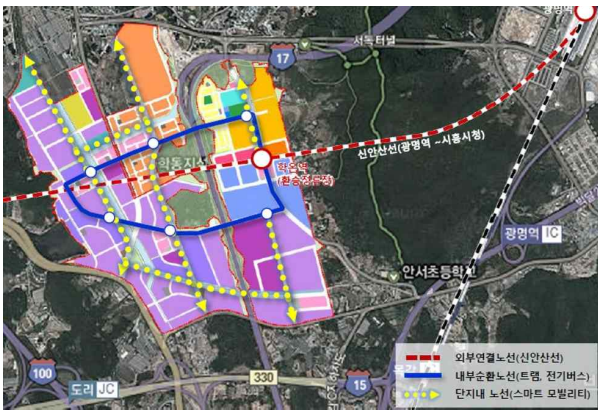

자료: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ar2Go_Amsterdam_Smart_ED_Herengracht.JPG

자료: https://www.flickr.com/photos/perspective/10162065175/

〈그림 2-25〉 경기도 광명시흥 TV 에너지 테스트베드 내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안)

자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방향, 경기도시공사 & 한아도시연구소(2017.08)

– 제로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단지 내 에너지 거래를 통한 제로에너지 타운 구현
- 클러스터(건물-건물간) 내 에너지 거래를 통한 클러스터의 제로에너지타운 구현
- 단지 내 클라우드 P2P 에너지 거래 기능 구현
- 제로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
- 제로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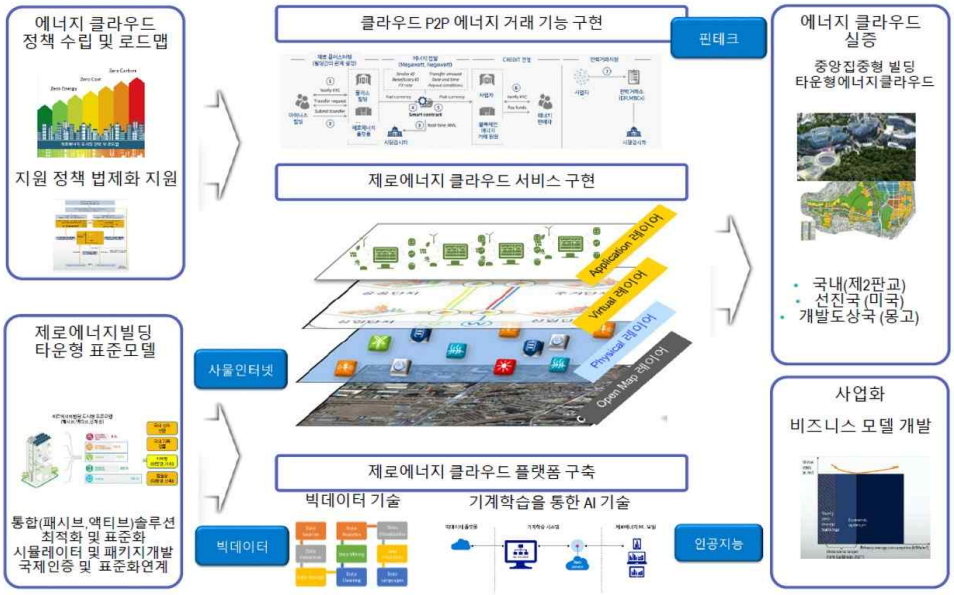

<그림 2-26> 제로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모델

자료: '에너지 클라우드: 제로에너지타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20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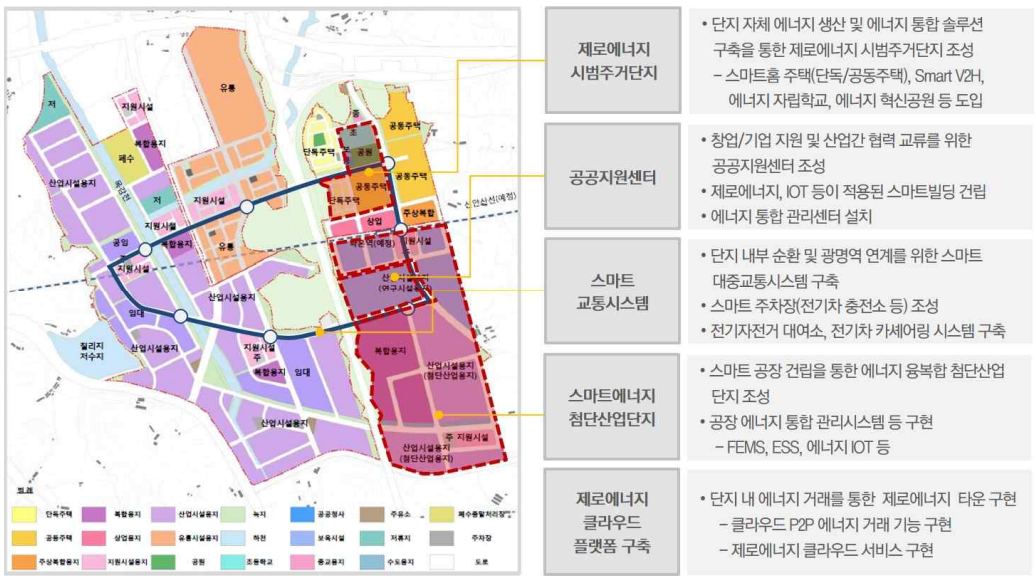

<그림 2-27> 경기도 광명시흥 TV 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방안(안)

자료: 4차 산업혁명 경기도 모델 구축 및 실행계획 연구, 이정훈 외(2018.02)

2) 스펀지시티

(1) 개 념

○ ′스펀지시티(Sponge City)′란 물순환 시스템을 도시공간에 적용한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로 중국이 선도적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음

- 2012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60년 만의 최대 폭우로 79명이 사망하고 100억 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
- 같은 해 중국 광동성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있었음
- 이에 중국 정부는 스펀지시티 사업을 추진, 2013년 12월 12일 시진핑 주석은 ′중앙 도시화 작업회의′에서 ′도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배수체계 보완과 자연적인 물 흡수 및 침투, 자연정화 능력을 가진 스펀지시티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4년에는 ′스펀지시티 건설에 관한 기술지침-저영향개발 우수시스템 구축(이하 ′스펀지시티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중

○ 스펀지시티 기술지침 규정에 의하면, ′스펀지시티란, 지형을 활용하고 흡수성이 강한 재질을 통해 빗물을 흡수하며, 빗물의 토양저류-침투-식물의 증발산 등 물순환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을 실현함으로써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의

- 스펀지시티 개념은 2012년 4월, ′2012 저탄소 도시 및 지역발전 과학 포럼′에서 처음으로 제기
- 스펀지시티는 도시 내 빗물저장과 정화시스템을 갖추어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비가 올 때 빗물을 최대한 저장했다가 물부족 시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시 말해, 스펀지시티는 지형을 활용하고 흡수성이 강한 재질을 통해 빗물이 생태에 침투되도록 하는 계획개념으로 잔디, 공원, 호수 등 생태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자연적인 수질정화 및 축적 기능을 발휘하여 스펀지처럼 빗물을 흡수하고 필요시 방출하게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것
- 나아가 녹색공간, 공원, 친수시설 등 생태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물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의 생태서비스 및 사회·경제서비스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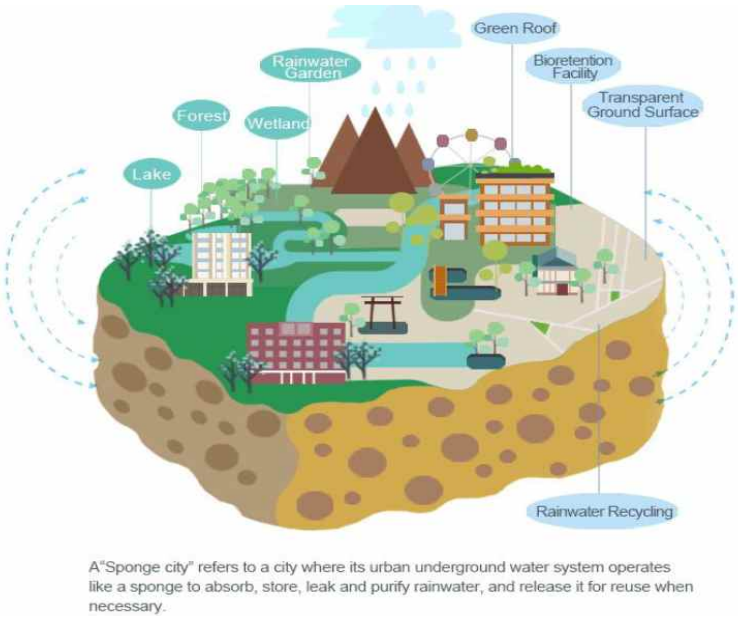

<그림 2-28> 스펀지시티 개념도

<그림 2-29> 중국의 스펀지시티 개념 및 주요내용

(2) 중국 스펀지시티 관련 규범

▌개 요

○ 2014년 중국 주택도시건설부(이하 주건부)가 '스펀지시티'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5년 국무원이 '스펀지시티 건설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공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스펀지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 2014년 2월 11일 중국 주건부는 스펀지시티 건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제시

- 2014년 10월 스펀지시티 건설에 대한 기술과 사례 등을 상술한 스펀지시티 건설기술지침을 발표함
- 2015년 1월에는 스펀지시티 시범도시 신청과 심사를 통해 무한, 중경, 지난 등 16개 도시를 시범구로 지정
- 2015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스펀지시티 건설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정식 공포함

○ 국무원에서 발표한 '지도의견'은 스펀지시티 건설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으로 스펀지시티의 개념 정의, 목표 및 기본원칙, 계획수립, 재정지원, 관리체계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스펀지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원칙과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지도의견' 규정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기본원칙 및 추진과제

○ '지도의견' 제1조2항의 기본원칙 규정에 의하면 스펀지시티 조성사업에 있어 '생태중심, 자연순환의 원칙',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정부주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 원칙'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스펀지시티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교통·환경·생태(녹지)·수자원·해양 등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정책과 수단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별 강우량, 빗물 유출량 등을 통계하여 우수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스펀지시티 건설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구도심지역과 신도시지역의 스펀지시티 조성', '스펀지형 건축물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생태공원 조성과 자연환경 생태계 복원'의 3가지를 제시함

〈표 2-2〉 중국 스펀지시티 건설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내용
구도시지역과 신도시지역의 스펀지시티 조성	• 2015년부터 전국 각 지역의 신도시, 산업단지, 경제개발지구 건설에 있어 스펀지시티 건설 지침을 따를 것 • 구도심의 경우 도시재생,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시배수시스템, 빗물저장·이용, 하천 생태계 복원을 통해 홍수·가뭄관리, 수질개선, 열섬효과 완화 등의 목표를 실현함 • 지역별로 스펀지시티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함 * 단, 스펀지시티 건설을 위해 대규모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대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한함
스펀지형 건축물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도록 스펀지형 건축물과 주거단지를 건설함 • 스펀지형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구축 시에는 빗물흡수·정화·저장이 가능한 신소재,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 • 도시의 배수시스템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저감함
생태공원 조성과 자연환경 생태계 복원	• 스펀지형 공원과 녹지를 보급하고 빗물의 흡수 및 이용률을 제고함 • 습지, 호수, 하천의 생태복원을 통해 수질개선, 물순환 기능을 제고함

자료: '지도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3) 중국의 스펀지시티 사업추진 전략 및 현황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2015년 4월 2일, '스펀지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제남시, 충칭시, 녕파시, 천진시 등 국가급 시범도시를 비롯해 성급 시범도시인 강소성 소주, 서장자치구 라싸, 호남성 장사시 등 총 16개 도시를 스펀지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

○ 중앙정부의 스펀지시티 사업은 2015년 16개 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대, 2020년까지 도시면적의 20% 이상, 2030년까지는 중국 전체의 80%를 스펀지시티로 건설하여 70% 이상의 빗물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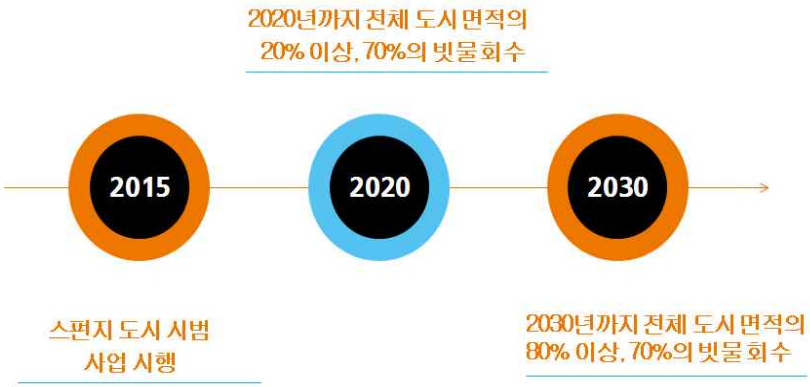

〈그림 2-30〉 중국 스펀시시티 사업추진전략

○ 2016년 4월 27일에는 북경, 천진, 대련, 상해, 녕파, 복주, 청도, 주해, 심천, 삼야, 옥서, 경양, 서녕, 고원 등 14개 도시를 추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총 30개의 시범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 중에 있음

〈그림 2-31〉 상해시 스펀지시티 조감도

〈그림 2-32〉 북경시 스펀지시티 조감도

○ 중국의 스펀지시티 정책은 주건부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스펀지시티 발전전략, 기술지침 및 관리기준 등을 수립함

○ 스펀지시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주건부가 수리부, 재정부와 공동으로 '스펀지시티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중앙재정부 지원정책'을 발표, 이를 통해 특별보조금으로 지원을 결정함

- 2015년부터 3년간 지원하며, 직할시의 경우 매년 6억 위안(약 1,005억 원)을 지원하고, 성급 도시의 경우 5억 위안(약 838억 원), 기타 도시의 경우 4억 위안(약 670억 원)을 지원
- PPP계약방식(민관협력)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보조금 총액의 1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함

○ 주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16개 시범사업 구역면적은 총 435㎢이며, 건축물, 도로, 공원, 녹지, 지하배수, 상수도 등 3,15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투자규모는 865억 위안(약 14조 4,870억 원)임

- 현재 신청사업의 59.8%에 해당하는 593개 사업이 완료됨

○ 중국은 스펀지시티 사업의 추진전략 및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가차원의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함

- 주건부는 2018년 5월 9일 복건성 복주에서 '스펀지시티 및 수생태계 글로벌 정상회담'을 개최
- 정상회담에서 「2018년 중국 스펀지시티 백서」를 발표하고, 상해, 복주, 천진, 광주, 평향을 스펀지시티 성공사례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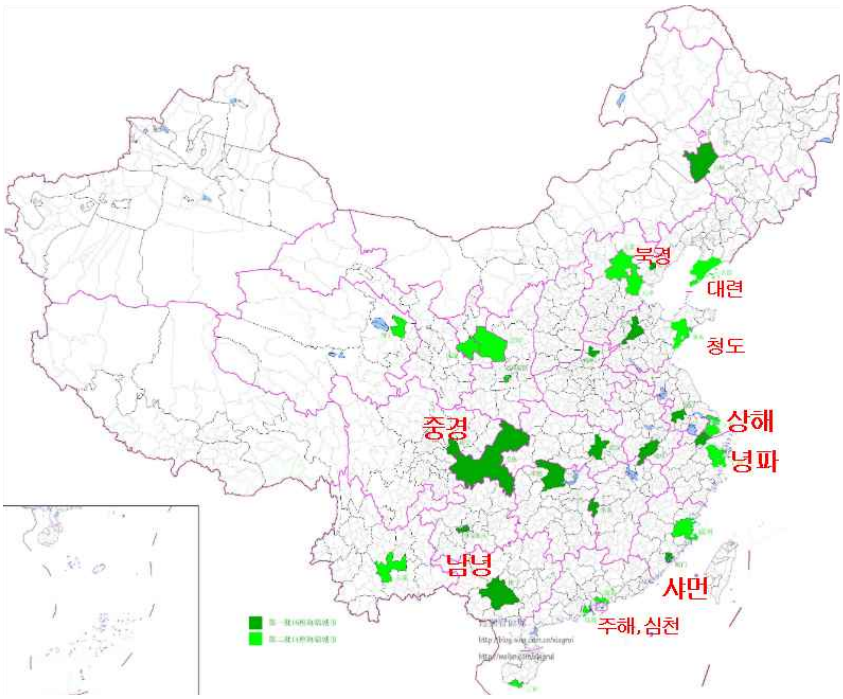

〈그림 2-33〉 중국 중앙정부 스펀지시티 시범사업 분포도

▌지방정부

○ 중앙정부의 '스펀지시티 조성사업'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

- 생태도시, 스펀지시티 등 국정과제 및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관할 행정구역 내 사업 우선순위 결정, 도시계획 및 공간의 활용·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결정하므로 지방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스펀지시티 시범사업은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중경시, 호남성 무한시, 복건성 복주시, 광동성 심천시, 섬서성 서안시, 광서성 남녕시, 해남성 해구시 등이 있으며,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총 370개 도시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 중에 있음

○ 지방정부는 주건부 '스펀지시티 조성사업 지침 및 행정규범'의 내용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 내 스펀지시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도시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도시계획과 연계토록 체계화함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 보조금 외에 지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해외 유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진행

○ 스펀지시티 사업 목표 및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지역별 자연환경 및 도시개발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함

- 경제가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된 연안도시: 심천, 상해 등
  - 도시화 가속화에 따른 주택난, 에너지 부족 문제, 빗물의 회수·저장·정화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신도시 건설시 녹지공원과 옥상정원, 녹색회랑 등 조성사업을 추진
  - 아울러 도심지역 배수시설 정비,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스펀지기능 확대를 추진함
- 일부 연안지역: 샤먼, 복주, 해주시 등
  - 금융혁신지구 조성과 함께 스펀지시티 계획을 함으로써 '금융센터+생태도시+스펀지시티'가 융합되어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기능을 수행함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외 민간분야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함
- 육지에서 독립된 섬 지역: 해남도(하이난섬)의 해구시
  - 태풍, 해일 등에 취약해 이로부터 침수피해를 감소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 하구생태습지 복원을 통해 태풍, 해일로부터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오염을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기능도 갖춤

- 또한 연안습지공원을 조성하고 연안지역 관광·레져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임

– 내륙지역

- '지속가능 도시', '생태도시'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녹지 조성, 배수시스템 정비, 빗물회수율을 높이는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침수피해를 저감하고 도시의 물순환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

〈표 2-3〉 중국 지방정부 스펀지시티 사업추진 사례

△ 심천 도심 스펀지시티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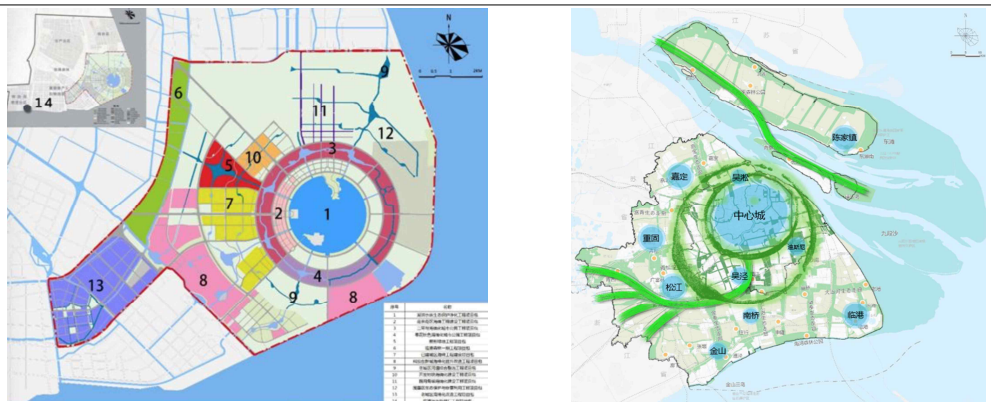

△ 상해 임강구 스펀지시티 계획안

△ 복주 해협금융센터CBD 스펀지시티 조감도

△ 항주 미래과학도시(LID) 시범구역 조감도

<표 2-3> 중국 지방정부 스펀지시티 사업추진 사례(계속)

△ 샤먼 연안-하천-호수 '대형 스펀지시티' 사업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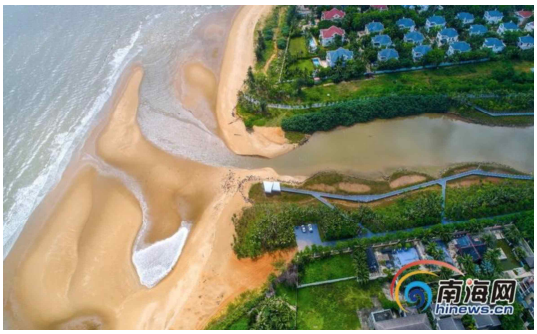

△ 해남 하구습지를 활용한 연안 스펀지시티 계획안

(4) 상해시 항만구역 스펀지시티 조성사업 사례

▌사업추진 필요성

○ 지구 온난화 등으로 2050년에는 중국 연안지역 해수면이 145~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해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안지역 침수피해가 우려

○ 상해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침수, 생태 등의 피해를 감소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 생태계 서비스 제고를 위해 스펀지시티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상해항은 홍콩항, 타이완의 가오슝항 등과 함께 동아시아 허브항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연재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사업목표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과 침수피해 방지, 수질

개선, 열섬효과 완화

○ 해면체로서의 도시공원, 생태습지공원은 지역주민에게 휴식과 오락장소를 제공하고 동·식물들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함

○ 스펀지시티 건설에 관한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자본 투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함

▌사업내용

○ 사업명: 상해시 항만구역 스펀지시티 조성사업 * 상해시 스펀지시티 계획에 근거

○ 사업규모: 항만구역(臨港) 내 면적 79.08㎢

○ 사업기간: 2016~2018년

○ 사업비: 81억 위안(정부재정)

○ 주요내용

- 생태보전 및 복원, 저영향개발 등
  - 상해시 항만구역 스펀지시티 사업에서의 저영향개발 모델이란, 적수호를 중심으로 주변 공원과 주택가의 빗물이 호수에 흘러들게 함으로써 빗물의 자연적 흡수·저장·정화기능으로 홍수·가뭄의 관리, 물순환 기능 제고 등에 기여하는 계획모델
- 적수호 생태민감지역을 중심으로 스펀지시티 기반시설 구축
- 도심지역 공원·녹지 조성과 연안습지 보호구역 지정 및 습지생태 복원을 통한 빗물의 흡수·저장·정화와 수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 신도시와 함께 구도심도 병행 추진

○ 구역별 사업계획

- 1구역: 호수 수생태계 보전 및 수질정화 시범구
- 2구역: 생태회랑 빗물 저장 및 정화 시범구
- 3구역: 신도시 스펀지시티 조성 시범사업구
- 4구역: 구도심 배수시스템 보완 및 우수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구
- 5구역: 상가 스펀지시티 조성 시범사업구
- 6구역: 기존 스펀지 기반시설 시범구
- 7구역: 농경지생태 보호 및 복원 시범구

〈그림 2-34〉 상해시 항만구역 스펀지시티 조성계획

〈표 2-4〉 상해시 항만구역 스펀지시티 조성계획

△ 1구역 시범사업 조감도

△ 호수 주변 빗물 흡수 소재 활용 (파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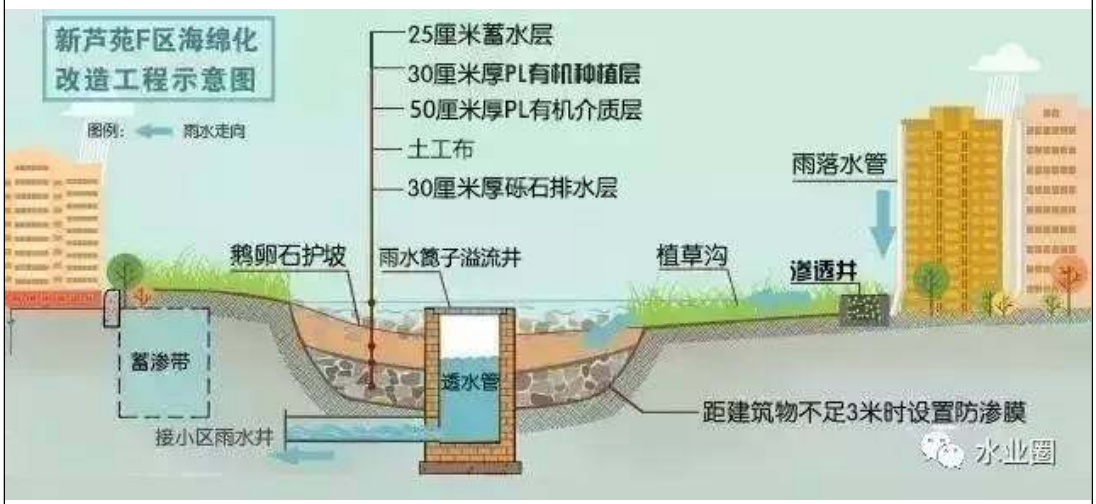

△ 상해시 항만구역 내 주거(아파트)단지 스펀지시설 설명도

* 빗물을 흡수·저장하고 정화해 두었다가 가뭄이나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저장해 둔 물의 이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지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3) 시사점

▌정책 관련

○ 국외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국가별 여건 및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 국가별 스마트시티 정책방향과 세부실행방안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적 여건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내용이 뚜렷이 구분됨

○ 특히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과 함께 지속적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 과정을 수행

- 첨단기술을 이용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로의 전환하고, 국가 및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최종 지향적 목표와 장기계획 수립
-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

○ 국외 스마트시티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시의회, 시민,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최종 수요자로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또한 국가 또는 도시별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 중

○ 우리나라도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 발굴·추진과 함께,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체계적 전략으로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관련

○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서 도시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형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이 필요

- 기존과 같이 대규모 인프라 및 자원 투입을 통한 물리적인 도시문제 해결방식은 한계에 도달

○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사례별 계획 및 기술요소가 유사하게 적용되어 있어 이후 국가 및 지역(도시)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필요

○ 스마트시티의 융·복합적 특성을 고려해 부처간 협업 및 민-관 협력형 사업모델 구축이 필요

-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모델의 경우 민간은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부처간 협력체계가 부족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양(연안)공간에서 특히 요구되는 자연재난·재해 대응 계획·기술의 도입과 접목이 필요하며, 중국의 스펀지시티 개념이 검토 가능한 하나의 계획요소가 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최근 약 5년 정도이며, 스마트시티 사업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해양을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연안도시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한 계획·기술로 완충녹지 공간을 두거나 방재시설을 하는 등의 수준인 것으로 보임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상위 목표 설정과 장기적·체계적 전략, 지속가능한 재정적 지원 등과 함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스마트도시 표준모델 개발 및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이 필요

- 단순 방재 개념의 접근이 아닌 근본적 대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적 인프라 계획 및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제3장

우리나라 연안지역 유형 및 유형별 특성

1. 분석범위 및 방법
2.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
3. 연안지역 권역별 기초통계 분석
4. 연안지역 유형분류 및 유형별 특성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연안지역 유형 및 유형별 특성

1. 분석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국내 연안지역 전체

– 연안지역은 해안선 기준 1㎞ 이내 해당 읍·면·동 581개(행정동 기준)

* 해안선 기준 1㎞ 이내 범위에 전체면적의 2/3 이상 포함되는 읍·면·동의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
* 해양(바다)과 접하지 않아도 해안선 기준 1㎞ 이내 범위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
* 제주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37개 읍·면·동)

○ 시간적 범위: 2016년 현재시점 기준

* 인구 및 사업체, 쇠퇴지표 자료는 조사시점 기준 2016년, 토지이용 자료는 변경반영 시점 기준인 2017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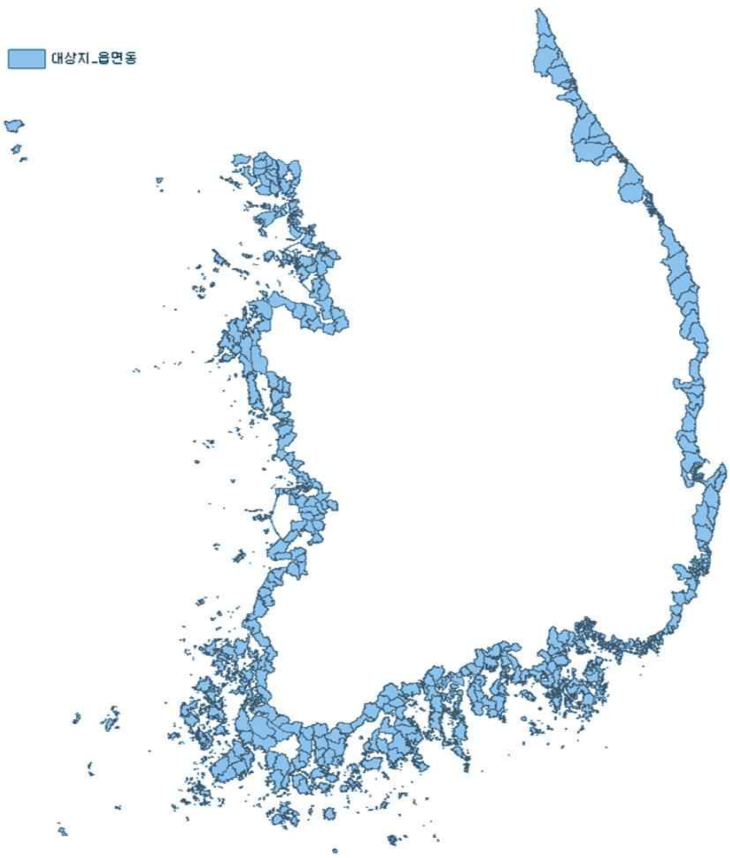

<그림 3-1> 분석 범위

○ 기초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안지역 관련 정량적 자료를 구축하고, 통계적 분석방법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함

- 기초통계 자료는 인구, 사업체, 토지이용, 쇠퇴지표로 구분하여 정리
  - 인 구: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안전부)
  - 사업체: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 토지이용: 국토공간정보포털(국토교통부)
  - 쇠퇴지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국토교통부)
- 요인분석: 연안지역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 추출
- 군집분석: 연안지역 유형구분 및 유형별 특성 분석

2.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

▌연안과 연안지역

○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특수환경대로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

- 연안이라 함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육지와, 육지활동의 영향이 미치는 일정 범위의 해역을 포함

○ 연안지역은 연안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인간의 생활이 어우러져 형성되며, 연안은 해양과 접한 입지적 특성 때문에 연안지역에서의 삶은 해양(바다)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음

- 연안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며 공생하는 공간
- 환경적으로는 하나의 개체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

> 연안은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연안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배가 된다.
> 연안관리 및 계획과 관련된 행정 업무의 주요 쟁점은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고, 민간기업이나 다양한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
> (Coastal Planning and Management, Kay, R. and Alder, J.(1999))

▌법·제도상 연안 유형

○ 연안지역 유형화는 2000년 해양개발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에서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해 생태연안, 환경관리연안, 친수연안, 산업기반 연안, 수산연안으로 구분한 바 있음

- 해양개발기본계획(2000)에서 구분된 유형의 경우 하나의 연안지역이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 이후 해양수산부는 연안통합관리계획(2000년)을 통해 연안지역의 자연생태계적 보존가치와 개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으로 유형 구분

○ 2010년 「연안관리법」에서는 이용상황(현황)과 자연환경, 미래 이용방향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구역과 이를 다시 기능에 따라 19개 구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유형을 보다 세분화함

-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의 범위를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연안해역: 바닷가와 바다
  - 연안육역: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의 범위 안에서 정한 육지와 무인도서
- 4개 연안용도구역은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 이용연안해역: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 특수연안해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산업시설구
  - 보전연안해역: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어장구
  - 관리연안해역: 복수기능을 가진 연안지역에 기능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관리될 수 있는 해역

○ 최근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연안관리법」에서 구분하고 있던 연안유형은 이관되었고,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

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해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의 9가지로 분류함

○ 이외에도 해양경관 가이드라인(2011) 등과 같이 연안지역 경관에 초점을 둔 유형분류도 있음

- 해양경관 가이드라인(2011)에서는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농어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생태경관의 7개로 유형을 분류함

▌학술적 연구

○ 최지연 외(2011)는 문헌과 제도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해양경관을 농어촌경관, 도시경관, 산업경관, 항만경관, 관광휴양경관, 해수욕장경관, 역사문화경관, 해안도로경관으로 구분·제시함

○ 최성두 외(2011)는 부산시 관계공무원 및 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안 관련 기존 법·제도적 세부구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연안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연안유형 구분과 연안관리정책도구 조합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

○ 최지연(2013)은 문헌자료를 토대로 한 정성적 분석으로 연안경관 유형 구분 및 유형별 경관관리요소를 도출하고, 사천시와 울진군을 대상으로 '연안환경-토지이용체계'의 연결성을 고려한 연안경관 분류를 시도함

○ 권도헌 외(2014)는 연안정주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문헌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산시 내 송정일대 어항의 연안정주지별 특성 분석을 시도함

3. 연안지역 권역별 기초통계 분석

○ 토지이용상 공업지역은 서해와 남해권역에 많이 분포하며, 서해권역은 주거+상업 비율이 높은 편

- 권역별 연안 읍·면·동 면적 합계는 남해(40.7%), 서해(33.3%), 동해(26.1%)의 순

- 권역별 연안 읍·면·동 면적 중 도시면적 차지비율의 경우 동해가 23.8%로 높고 서해와 남해는 19.4%로 동일(전체 평균 20.5%)
- 용도지역상 주거+상업은 서해권역에 많이 분포하며, 공업지역은 서해와 남해권역에서 비율이 높고 동해권역은 낮은 편

○ 사업체 현황으로는 어업과 조선업, 관광, 운수업 모두 동해권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남해동부권은 특히 조선업이 집중 분포

- 총인구수는 동해, 서해, 남해의 순
- 총사업체 및 총종사자수는 동해와 서해에 비해 남해가 적은 특성을 보임
- 조선업은 남해동부와 동해에 집중
- 어업과 관광, 운수업은 동해에 비교적 집중

<표 3-1> 연안지역 인구 및 사업체 현황

해 당 권 역		총인구수	사업체					
			총 사업체수	총 종사자수	어 업	조선업	관 광	운수업
동 해		2,322,362	190,815	936,240	2,675	48,497	17,936	6,370
서 해		2,011,227	182,842	1,089,396	38	16,179	12,991	2,012
남 해	남해동부	1,152,800	88,516	496,756	67	58,522	6,914	705
	남해서부	730,646	54,036	239,996	1,378	2,270	3,937	725
합 계		6,217,035	516,209	2,762,388	4,158	125,468	41,778	9,812

* 권역별 합계

<표 3-2> 연안지역 토지이용 현황

해 당 권 역		토지이용							
		전 체		도시면적		주거+상업		공 업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동 해		4,337.96	26.1	1,034.09	30.3	168.24	26.3	108.82	23.3
서 해		5,537.79	33.3	1,071.48	31.4	300.87	47.0	173.54	37.1
남 해	남해동부	2,589.78	15.6	647.25	18.9	89.00	13.9	86.48	18.5
	남해서부	4,168.46	25.1	663.63	19.4	81.64	12.8	99.11	21.2
합 계		16,633.99	100.0	3,416.45	100.0	639.74	100.0	467.95	100.0

* 권역별 합계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 연안지역 유형분류 및 유형별 특성 분석

▌분석변수

○ 지역 내 거주민들의 생활현황, 지역의 개발 및 쇠퇴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

- 생활현황 및 지역의 개발현황 관련 지표로는 인구, 사업체(어업, 조선업, 관광업, 운수업), 토지이용(주거, 상업, 공업)
- 지역의 쇠퇴현황 관련 지표로는 인구변화, 사업체변화, 노후건축물비율

○ 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성분은 7개로 나타났으며, 7개 요인으로 총분산의 73.25%가 설명됨

○ 요인분석에 의한 변수별 요인점수 값을 군집분석 변수로 활용

〈표 3-3〉 변수간 요인분석 결과

세부변수	요인분석 성분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인 구	쇠퇴양상	운수업	산업단지	조선업	관광업	어 업
총인구수	.918	.239	-.055	.032	.071	-.072	.018
0~4세 인구수	.812	.369	-.053	.016	.143	-.148	.005
65세이상 인구수	.775	-.040	-.120	.060	-.080	.134	.138
총사업체수	.759	.107	.302	.312	.040	.070	-.030
과거대비인구변화(%)	.618	.467	-.021	.006	.174	.007	-.066
총종사자수	.528	.142	.288	.468	.288	-.014	-.074
(용도)상업지역면적	.421	.061	.187	.418	-.121	.078	-.113
도시재생기준부합(개수)	-.258	-.871	.013	-.099	-.051	-.097	.087
노후건축물비율(%)	-.097	-.771	.042	-.194	-.053	-.082	.114
과거대비사업체변화(%)	.052	.750	.041	.220	.001	.087	-.004
최근인구연속감소년수	-.225	-.662	.070	.128	-.056	-.138	-.140
최근사업체수연속감소년수	-.104	-.653	-.080	-.207	-.021	-.012	-.016
운수업종사자수	.008	-.007	.926	.010	.003	-.013	.130
운수업사업체수	.000	.000	.915	.023	.003	.023	.082
도시지역면적(시가화용지)	.181	.301	-.091	.773	.095	.084	.127
(용도)공업지역면적	-.044	.142	.066	.715	.326	-.123	-.020
(용도)주거지역면적	.440	.208	-.089	.497	-.148	.055	.019
조선업종사자수	.076	.037	-.009	.008	.912	.022	-.018
조선업사업체수	.048	.096	.010	.212	.894	-.021	-.004
관광업종사자수	.057	.151	.032	.021	.027	.919	.056
관광업사업체수	-.035	.158	-.017	-.006	-.033	.913	.149
어업사업체수	.034	.001	-.045	.041	-.025	.237	.868
어업종사자수	.009	-.057	.348	-.008	-.003	-.025	.809
초기고유값(분산%)	6.187(26.90)	2.369(10.30)	2.305(10.02)	2.039(8.87)	1.562(6.79)	1.269(5.52)	1.115(4.85)
회전제곱한적재값(분산%)	3.899(16.95)	3.445(14.98)	2.086(9.07)	2.054(8.93)	1.942(8.44)	1.863(8.10)	1.557(6.77)
회전된인자누적분산(%)	16.95	31.93	41.00	49.93	58.37	66.47	73.25

▌군집분석

○ 유형분류를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

○ 계층적 군집분석의 군집해석수를 기준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를 해석함

* 계층적 군집분석은 각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연결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하위그룹(초기단계)의 군집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해나가면서 위계를 가지는 군집들을 만들어가는 분석방법

*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정한 상태에서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개체를 하나씩 포함해 나가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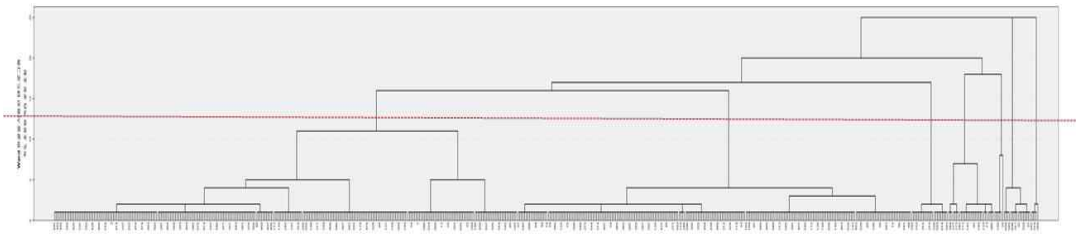

<그림 3-2>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표 3-4> 비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구 분	군집중심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6군집	7군집
인 구	**-.39685**	.22797	-.08304	1.02517	.02063	**-.04844**	**.78058**
쇠퇴양상	**.69428**	-.23097	.31141	**.59497**	-.02381	**-.10412**	**.40071**
운수업	.02749	-.26735	17.76444	.00618	**4.59877**	**-.10070**	-.19197
산업단지	-.29802	.24227	-1.01460	**3.12635**	.22196	**-.19728**	-.02594
조선업	-.05133	-.06248	-.20449	-.18954	-.04826	**-.07618**	**9.83184**
관광업	**2.41837**	**.76572**	-.70756	-.19062	.12988	**-.24439**	.28512
어 업	-.37243	**5.39515**	4.20694	-.31932	-.47976	**-.11277**	-.13753
관측치수	41	9	1	35	8	482	5

○ 분석 결과, 국내 연안지역 유형은 어업, 조선업, 관광의 지역별 집중분포 특성과 쇠퇴양상이 일부 가미되어 구분된 4개의 유형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연안유형 등으로 구분

- 유형 1(1군집)은 관광업 비율이 높은데 비해 인구가 적고 쇠퇴양상이 비교적

뚜렷한 특징을 보임

- 유형 2(2군집)는 어업비율이 매우 높고 관광업이 일부 분포함
- 유형 4(4군집)는 산업단지 개발비율이 매우 높으며 인구는 평균 이상이나 쇠퇴양상을 보임
- 유형 5(5군집)는 전체적으로 평균적 수준이며, 운수업이 일부 집중
- 유형 6(6군집)은 인구, 사업체, 토지이용, 쇠퇴양상 모두가 평균적 수준
- 유형 7(7군집)은 조선업 비율이 높고 인구분포 비율이 매우 높지만 쇠퇴양상을 보임

  * 해당지역 수가 1개만 분류된 유형(3군집)은 해석에서 제외

○ 그러나 특징지어지는 유형으로는 전체 581개 읍·면·동 중 98개(17.0%)만 해당

- 연안지역 해당 읍·면·동 중 482개가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됨

〈표 3-5〉 군집별 해당 읍·면·동

군 집	해당 지역(읍·면·동)
1군집	부산해운대-우1·중1·송정, 인천중구-용유/강화-화도/옹진-북도·자월·영흥, 울산울주-서생, 경기화성-서신, 강원강릉-강동·사천·연곡·경포/속초-대포/삼척-근덕·교동/고성-죽왕·토성/양양-손양·현북·현남·강현, 충남보령-대천5/태안-안면·고남·남면·근흥·소원, 전북군산-옥도/부안-변산, 전남여수-돌산, 경북포항-청하/경주-양남/울릉-울릉/통영-산양/거제-일운·동부/남해-삼동·남면·창선
2군집	부산중구-동광·남포/서구-충무·남부민1/사하-다대1, 전남여수-소라·남면·화정·삼산
3군집	부산중구-중앙
4군집	부산강서-대저2·녹산/기장-기장·장안, 경기화성-남양/평택-포승·현덕/안산-초지·대부/시흥-신현·정왕1·정왕2/김포-양촌·대곶, 충남서산-대산/태안-태안, 전북군산-소룡/여수-율촌·삼일/순천-해룡/광양-광양·골약·금호/해남-산이, 경남창원-웅남·웅천
5군집	부산동구-초량1·초량3·범일2/영도-남항·봉래1, 인천중구-연안, 울산남구-장생포, 충남당신-석문
6군집	부산중구-대청·보수·광복(외)/서구-부민·아미·초장(외)/동구-초량2·초량6·수정1·수정2·좌천1·범일1(외)/영도-청학1·청학2·동삼1·동삼2·신선(외)/남구-대연3·대연4·용호1·문현3(외), 인천연수-옥련1·옥련2/남동-논현1/서구-가좌1·청라2(외), 경기시흥-정왕3·정왕4·월곶(외)/화성-우정·송산·장안(외), 강원강릉-옥계·초당·송정·성덕(외)/동해-북삼·부곡(외)/속초-영랑·동명·조양(외)/삼척-원덕·남양·정라/고성-간성·거진/양양-양양, 충남보령-주교·오천·천북(외)/서산-부석·팔봉·지곡(외)/당진-송악·신평(외)/서천-장항·마서·서면(외) /태안-원북·이원, 전북군산-성산·옥서·신풍·조촌·구암(외)/김제-진봉·광활/고창-상하·부안(외), 전남목포-용당2·산정·목원·동명·만호·부흥(외)/여수-동문·한려·중앙(외)/고흥-금산·영남·과역(외), 경북울진-죽변·후포(외), 경남통영-용남·도산·광도(외)/거제-사등·둔덕·능포(외)/창원-진동·현동·가포(외)/고성-고성(외)/하동-금남·북천(외) 등
7군집	울산동구-방어·전하1, 전남영암-삼호, 경남거제-아주·장평

주변지역 여건과 함께 지역의 환경적 & 이용적 특성을 고려한 연안관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연안공간 조성이 중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및 기술요소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지역 특성 연구가 필요

- 본 장에서는 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짐
- 물리적 개발·이용 특성과 자연환경적 특성은 상반되는 개념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연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제4장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모델

1.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
2.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모델 구상

제4장.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모델 구상

1.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1) 도시의 발전과 스마트시티

▌도시의 발전과 지능사회화

○ 도시는 ′Organic City′에서 ′Self-organizing City′, ′Mixed Reality City′에서 ′Additive City′로 진화

〈그림 4-1〉 도시의 진화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 도시는 점차 그 자체가 지능사회 플랫폼인 기능과 형태로 발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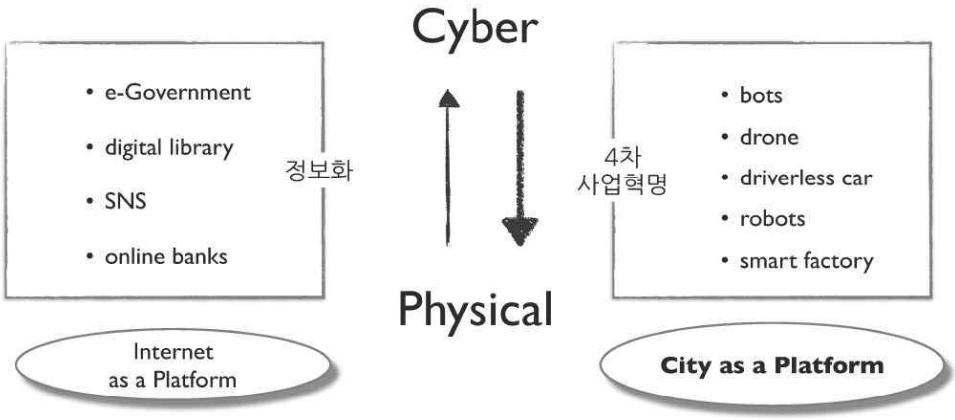

〈그림 4-2〉 도시의 지능사회 플랫폼으로의 발전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스마트시티 발전단계와 서비스 수준

○ 스마트시티 발전단계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시공간에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0년 중반을 시작으로, 기술개발 및 물리적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현재까지 크게 4가지로 구분 가능함

- 스마트시티 1.0: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도시의 지속적 성장이 목적(암스테르담 외)
- 스마트시티 2.0: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센서를 기반으로 한 도시운영의 효율성이 목적(한국 송도)
- 스마트시티 3.0: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시서비스의 과학화가 목적(미국, 중국)
- 스마트시티 4.0: 현재 이후, 도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지능시대 도시건설을 목표로 함(싱가포르)

○ 스마트시티를 위한 서비스 발전수준은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1〉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전수준

발전단계	발전수준	주요특징	도시변화
Level 1	상황인지 서비스	• 사물인터넷 기반 데이터 수집 • 모니터링과 상황공유 중심 • 공간정보와 연계	•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 • 에너지절감 등 도시효율성 제고 • 위치기반 서비스 등 신서비스
Level 2	수직적 지능 서비스	• 분야별(수직적) 데이터 분석 • 원인분석, 예측 등 지능형 분석 • 블록체인 등 데이터 활용 혁신	• 지능형 CCTV 등 관제 자동화 • 맞춤형 공공서비스(Push) • 커뮤니티 시민자율서비스 태동
Level 3	수평적 지능 서비스	• 수평적으로 타분야 데이터 융합 • On-Off 연계 서비스 • 데이터 허브 등 플랫폼 기반	• 부분최적화를 넘어 전체최적화 • 도시문제 해결능력 강화 • 시민 개인의 의사결정능력 제고
Level 4	준자율 서비스	• 인공지능기반 준자율 의사결정 • 규칙기반에서 상황기반 • 생명 걸린 고위험 서비스 가능 • 스마트시티 핵심 플랫폼 완성	• 도시관리 및 운영의 자동화 • 시민중심 맞춤서비스(Pull) • 자율주행 무인셔틀 등 미래 신서비스 본격화
Level 5	자기조직화 서비스	• 로봇 기반의 움직이는 도시 • 인간과 로봇의 협업 • 가상공간을 활용한 경험 창출	• 교통체증 등 자율적 문제해결 • 시민경험·감정 중시 도시운영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의 최적화'는 아니며, 스마트시티 발전단계는 '전체의 최적화'를 향한 과정임

〈그림 4-3〉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재작성

2)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

(1) 관련 용어

▌스마트시티 개념

○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이 지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 도시

- 스마트시티 개념은 도시인구 증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남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기능의 한계는 에너지, 교통, 재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효율적 도시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인프라 확충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서 스마트시티 개념이 주목받고 있음(진재한 외, 2018)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스마트시티는 최신 ICT와 기반시설 간의 융합에서 시민-민간-공공협력 파트너쉽을 통해 인적·사회적 자본생성의 주요 동력인 개방형 혁신생태계 개념으로 진화되고 있음

- 공공주도/기반시설인프라
  ▸ 공공+민간/서비스인프라
  ▸ 시민+민간+공공/혁신생태계

〈그림 4-4〉 스마트시티 목표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은 국가, 경제수준, 지역 및 도시별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여러 스마트시티 정의들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공간에 적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 주요 스마트시티 정의

연구자	개념 정의
ITU	삶의 질, 도시운영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현재, 미래세대의 필요를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 충족시키기 위해 ICT기술 및 기타 수단을 활용하는 혁신도시
EU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도시
Birminghan City Council	인적자원과 사회 인프라, 교통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에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도시
Forrester Research	스마트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좀 더 지능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교육, 의료, 공공안전, 부동산, 교통 및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도시
Harrison rt al.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핵심기술이 결합되어 극대화된 도시
김갑성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김태경 외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운영의 서비스 효율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ICT기술과 기타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도시이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필요를 충족하는 도시
이재용 외	도시공간에 정보통신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하여 행정, 교통 및 물류, 방범 및 방재, 에너지 및 환경, 물 관리, 주거 및 복지 등 도시기능을 효율화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이정훈	교통, 환경, 에너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 공무원, 민간기업 등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ICT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플랫폼을 제공하는 도시

▌안전도시 개념

○ 최근 들어서 '안전'의 가치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도시의 안전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피해가 특히 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짐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성장사회를 거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양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발전은 달성했지만, 도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시민들 사이의 가치 공유, 상호연대와 같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성숙도가 물리환경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안전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게 됨

○ '안전도시'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보편화된 정의는 찾기 어려우며, 세계보건기구(WHO)가 1989년 스웨덴에서 개최한 '제1회 사고손상 예방 학술대회'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에 기초하여, '안전도시(Safe Community)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의 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델'로 정의함

- 실제로 '안전도시(Safe Community)'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Community'를 '도시'로 해석하면서 개념이 널리 알려진 것으로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안전한 지역사회 형성을 유도하는 하나의 인증사업에서의 주된 지향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함
- 유사한 예로,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SDR)에서는 도시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 도시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사업을 'Making Cities Resilient'라는 명칭으로 수행 중

○ 국내에서는 도시의 안전성 강화라는 포괄적인 목표 하에 물리적 시설정비지원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부터 범죄예방, 주민참여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까지 다양한 형태로서, 특정 지역 및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도시와 관련한 사업들이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음

- 국민안전처의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안전한 지역사

회 만들기 모델사업',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사업' 등
- 소방방재청의 '방재마을 시범사업' 등

▌해양도시 개념

○ '해양도시'란 도시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된 개념으로, '연안에 입지하여 해양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도시'로 이해할 수 있음

-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인류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공간이자, 지역 간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보교환과 문화창조의 근간이었음.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인 주요 도시가 세계 연안지역 곳곳에 만들어졌음
- 해양도시에서의 삶은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항만물류산업, 수산업 등이 발달하거나 해양레저와 같은 해양문화도 함께 발전

○ 바다는 해양도시에 있어 산업과 경제, 문화, 관광, 교통, 안전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침

○ 연안에 입지하고 있는 해양도시는 해양공간의 특성에 의해 도시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양도시는 이러한 요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해양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 가능함
- 자연적 재난으로는 태풍, 해일, 풍랑, 호우(홍수), 조수, 적조 등
- 사회적 재난으로는 선박교통사고, 해양유류오염사고, 해수욕장 인명사고, 해상에서의 테러, 밀입국 범죄 등

(2)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는 '해양(연안)공간',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개념이 융합된 '자연재해 대응형 스마트시티'

– 본 연구에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라 함은, 해양도시에서의 안전 위협요소 중 자연적 재난에 초점을 둔 스마트시티 모델을 의미함

○ 안전도시 구축방안으로 ICT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첨단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선제적으로 해양재난·재해 위험을 관리·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 현장대응을 수행하며 민-관 상호협력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개념 적용

○ 따라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란, 'ICT를 포함한 스마트 첨단기술이 기반이 되어 해양공간의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시민)의 안전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나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

<그림 4-5> '해양도시',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개념의 융합

2.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모델 구상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도시상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도시상은 '교통, 환경, 에너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특히 해양재난·재해 위험의 관리·예방과 신속·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ICT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

– '스마트시티' 도시상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도시공간 창출과 미래 도시 공동체의 실현'

• 시민의 행복한 삶과 쾌적한 환경, 공유 경제 등이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을 담을 그릇(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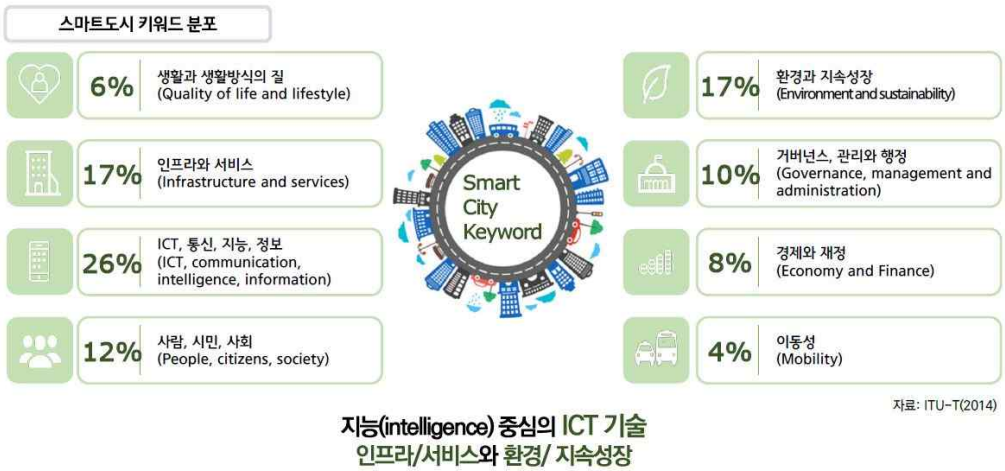

〈그림 4-6〉 스마트시티 도시상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그림 4-7〉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성 체계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해양국토를 보전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 재난·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시스템 구축기반 마련이 요구됨

- ‘도시 지능화(Urban Intelligence)’란, 도시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다양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화 서비스의 비율은 전체 서비스 중 약 30%로 나타났으며, 지능화 기술은 현재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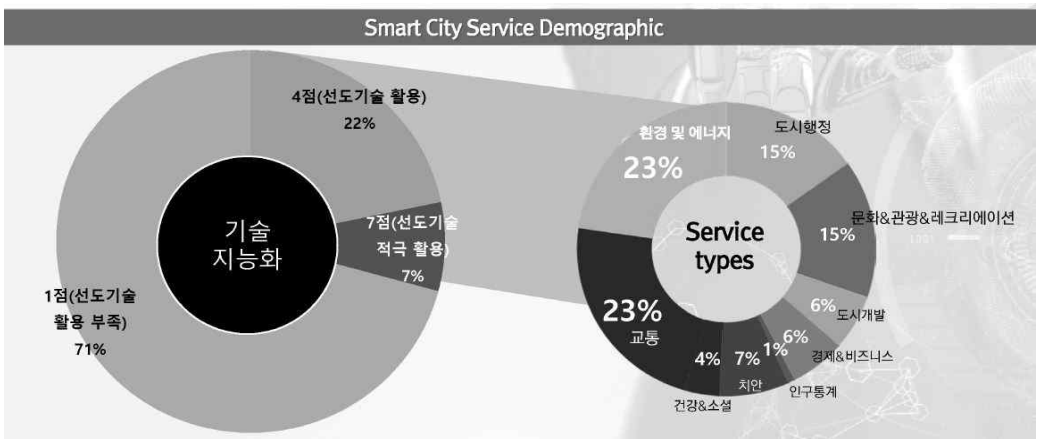

〈그림 4-8〉 지능화 서비스 비율 및 활용 분야

자료: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2018.05)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구성요소

○ 스마트시티는 그 개념 안에 도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요소를 포함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스마트시티가 도시민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플랫폼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은 스마트시티가 수많은 개별요소의 집합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세부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됨

-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Frost & Sullivan(2014)은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를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빌딩, 스마트이동성, 스마트기술,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기반시설, 스마트정부, 스마트보안, 스마트시민으로 정의

* 스마트에너지: 지능형 통합전송 및 전력분배에 대한 수요대응을 위해 첨단 미터 인프라(AMI), 배전관리 및 고전압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사용
* 스마트빌딩: 조명, 온도, 보안 및 에너지 소비를 독립적으로 또는 최소한의 사람 개입으로 제어 및 관리하는 첨단 자동화 인프라로 친환경적, 에너지 효율적 시스템
* 스마트이동성: 저공해자동차 및 다양한 운송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이고 통합된 기술 및 솔루션을 사용한 지능형 이동성
* 스마트기술: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스마트 홈 솔루션, 고속 광대역 연결 및 5G 기술 등으로 집, 사무실, 휴대폰 및 자동차를 단일 무선 IT 플랫폼에 연결
* 스마트헬스케어: eHealth 및 mHealth 시스템과 지능형 연결 의료기기를 사용, 건강 모니터링 및 진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 웰니스, 웰빙을 장려하는 정책
* 스마트기반시설: 에너지그리드, 운송 네트워크,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시스템, 통신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지능형 인프라를 관리, 통신 및 통합하는 지능형 및 자동화 시스템
* 스마트정부: 인센티브, 보조금 또는 기타 홍보를 통한 친환경 및 지능형 솔루션 채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및 디지털서비스
* 스마트보안: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비디오 감시, 공공 안전 LTE 및 관리 보안 서비스와 같은 기술 및 솔루션
* 스마트시민: 일상적인 활동에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채택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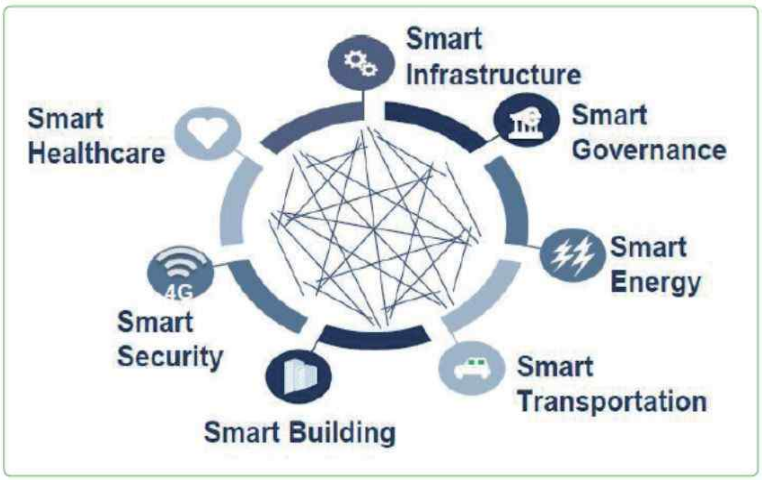

〈그림 4-9〉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Frost & Sullivan, 2016)

- 이재용 외(2016)는 스마트시티가 포함하는 세부요소를 스마트네트워크, 스마트안전, 스마트교통, 스마트경제, 스마트에너지·환경, 스마트복지로 구분
- 조영태 외(2017)는 교통, 행정, 건강, 복지, 환경, 범죄, 재해 등의 세부요소를 제시
- 김태경 외(2018)는 스마트시티 기술 솔루션 분야를 교통, 에너지, 환경, 방범·

안전, 산업·경제, 생활복지로 구분

- 윤용진(2018)은 도시교통, 에너지, 안전·보안, 환경·수자원, 건조환경·도시관리의 5가지 세부요소를 설명
- KT(2018)는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를 관광, 건강, 에너지, 수자원, 환경, 안전, 교통 분야로 구분
-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혁신기술이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한 7가지 세부요소로 구분
  - 인프라: 도시인프라, ICT인프라, 공간정보인프라
  - 데이터: IoT, 데이터공유
  - 서비스: 알고리즘 & 서비스, 도시혁신

* 도시인프라: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도시 하드웨어. 스마트시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지만 도시 하드웨어 발전도 필요

* ICT인프라: 도시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인프라. 과거에는 사람과 컴퓨터의 연결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스마트시티에서는 사물 간 연결이 핵심

* 공간정보인프라: 지리정보, 3D지도, GPS 등 위치측정 인프라, 인공위성, Geotaagging (디지털 컨텐츠의 공간정보화) 등.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 융합을 위해 공간정보가 핵심 플랫폼으로 등장. 공간정보 이용자가 사람에서 사물로 변화

* IoT: CCTV를 비롯한 각종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도시 내 각종 인프라와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서 가장 시장규모가 크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영역. 특정 부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투자 확대 가능

* 데이터공유: 생산된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와 활용 지원. 좁은 의미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 내 스마트시티 리더들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

* 알고리즘 & 서비스: 데이터를 처리·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도시서비스. 실제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 확보가 관건

* 도시혁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사회적 환경. 본격적인 지능사회의 실현

〈그림 4-10〉 스마트시티 발전단계와 구성요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 아울러 스마트시티 요소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인프라, 제도, 인적자원이 필요함

-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정보가 도시 전역으로부터 수집, 분석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즉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인프라, 제도, 인적자원들이 함께 어우러진 플랫폼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
- '기술·인프라'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한 인프라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실현시킴
- '제도'는 민관 또는 부처간 거버넌스를 통해 스마트시티 실현을 뒷받침함
- '인적자원'은 혁신성을 가진 시민 및 기업 육성을 통해 스마트시티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함

○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히 취약한 해양재난·재해에의 선제적 대응에 특화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는 기존 스마트도시 구성요소에 해양재난·재해 관련 다양한 혁신기술 요소가 추가·결합되어 도시 내 각종 인프라와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형태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는 기존 스마트시티 서비스영역에 안전영역을 추가·강화한 요소로 구성
- 안전 분야에서도 특히 해양으로부터 위협요인이 되는 자연재난·재해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서비스 강화가 목적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각종 센서로 정보가 수집·공유되며 처리·분석되는 과정을 통해 시민체감 서비스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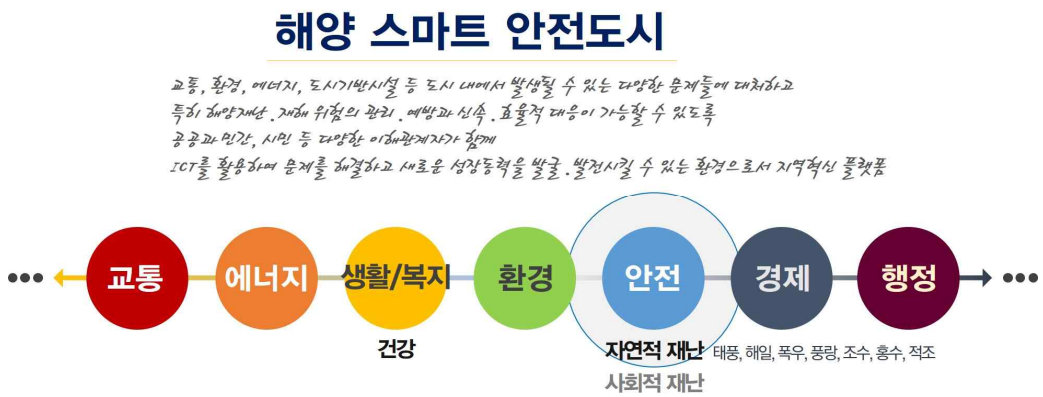

〈그림 4-11〉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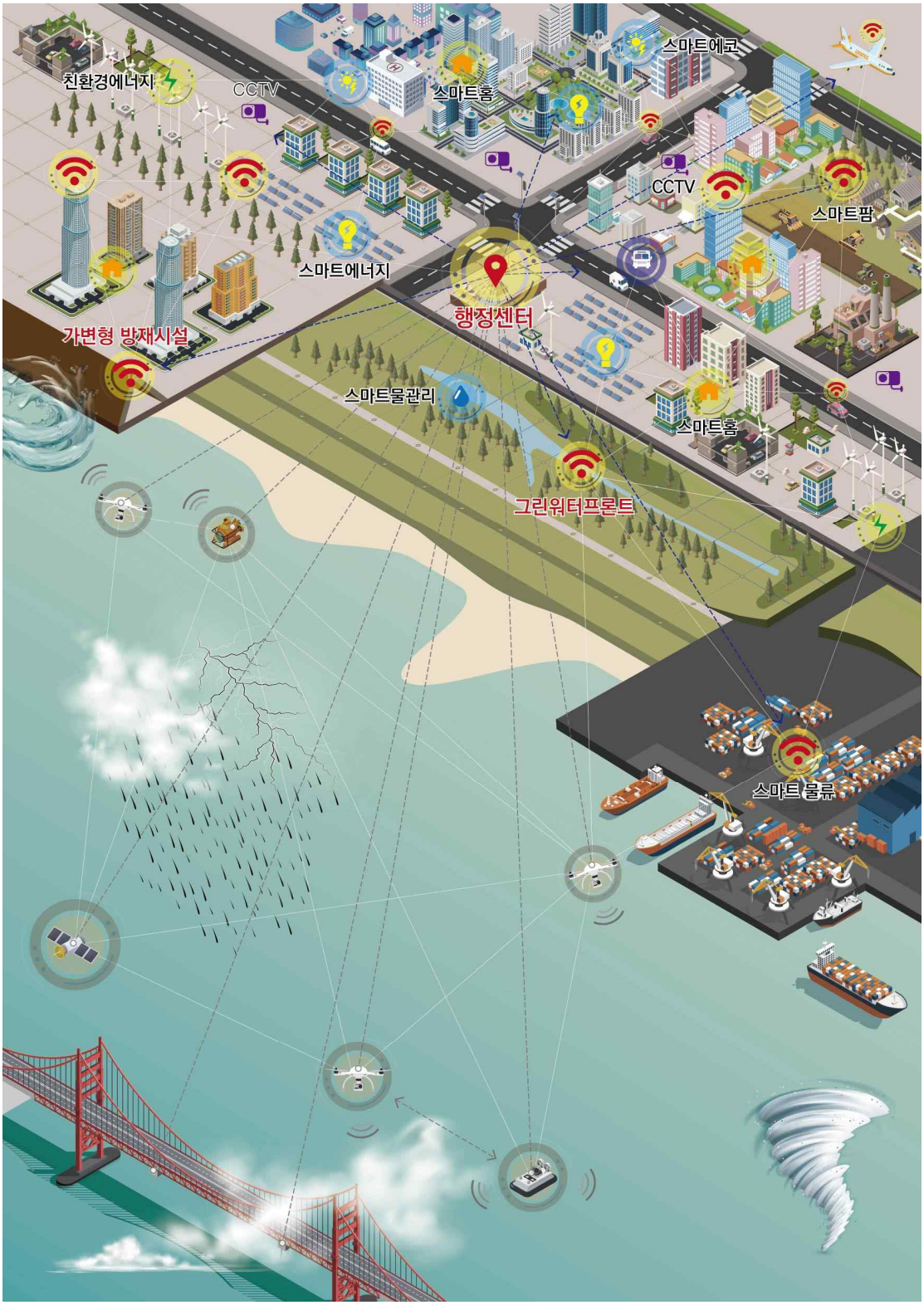

<그림 4-12>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도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도시 인프라 및 공간모델 구상안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관련 신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공간구조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따라서 에너지 공급·소비의 최적화 계획·기술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응한 스펀지시티 개념과 스마트 물순환시스템 등을 적용한 도시 인프라 구축 모형개발이 급선무

○ 도시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과 함께 각종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도시 내 각종 인프라와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산된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와 활용이 지원되는 스마트시티 속에서, 해양재난·재해에 대응한 방재기술 적용 수준을 넘어 도시 인프라 및 공간모델 기반구축이 전제되어 보다 완전한 시민 체감형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서비스를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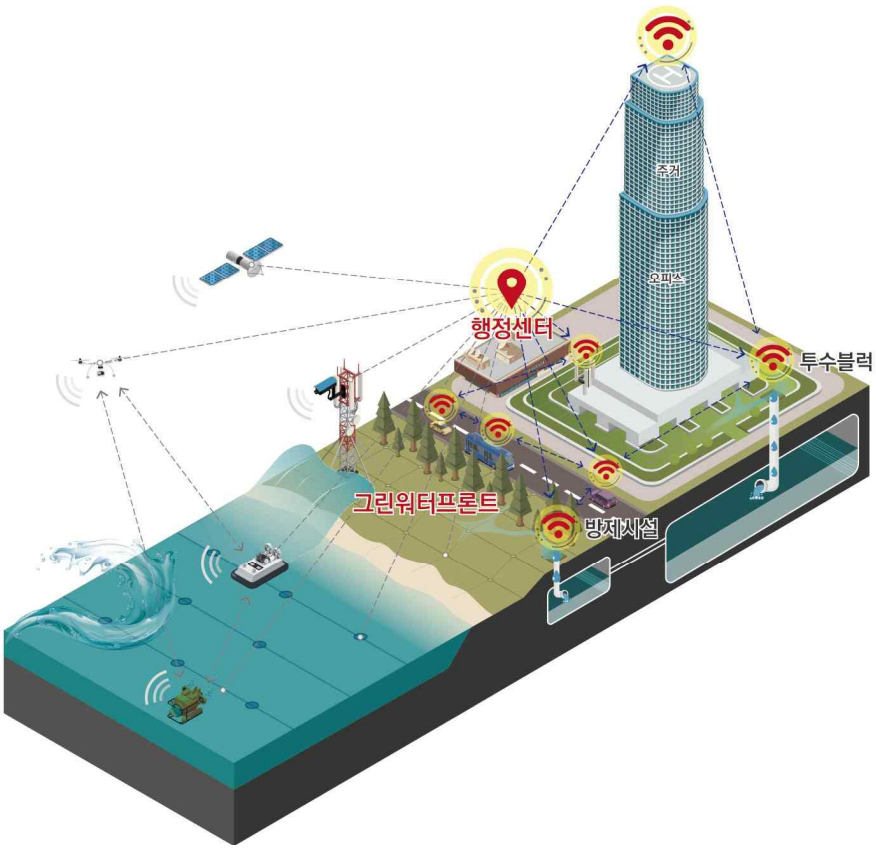

〈그림 4-13〉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도시 인프라 구축모델

제5장

결 론

1. 소 결

2. 향후 연구과제

제5장. 결 론

1. 소 결

○ 본 연구는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해양재난안전 지능형모델 구축과 이를 위한 기술요소 개발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초년도 사업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외 동향과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연안지역 관련 활용가능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연안지역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정립과 함께 스펀지시티 개념을 적용한 자연재해 대응형 해양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모형을 제안함

○ 국외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국가 또는 도시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 추진전략과 함께 지속적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 과정을 수행하며, 국가 또는 도시별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 중에 있음. 또한 중앙부처, 지방정부, 시의회, 시민,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최종수요자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우리나라도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상위 목표 설정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지속가능한 재정적 지원 등과 함께, 3면이 바다인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이 필요

○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이용(개발)현황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어업, 조선업, 관광의 지역별 집중분포 특성과 쇠퇴양상이 일부 가미된 4개의 유형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연안유형 등으로 구분. 그러나 특징 지워지는 유형으로는 전체 581개 읍·면·동 중 98개(17.0%)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모두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됨

– 주변지역 여건과 함께 지역의 환경적 & 이용적 특성을 고려한 연안관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연안공간 조성이 중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및 기술요소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지역 특성 연구가 필요

○ 마지막으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을 'ICT를 포함한 스마트 첨단 기술이 기반이 되어 해양공간의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시민)의 안전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나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교통, 환경, 에너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특히 해양재난·재해 위험의 관리·예방과 신속·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ICT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서 지역혁신 플랫폼'을 도시상으로 설정

○ 또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는 기존 스마트도시 구성요소에 해양재난·재해 관련 다양한 혁신기술 요소가 추가·결합되어 도시 내 각종 인프라와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형태로, 기존 스마트시티 서비스영역에 안전영역을 추가·강화한 요소로 구성되며, 안전 분야에서도 특히 해양으로부터 위협요인이 되는 자연재난·재해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서비스 강화가 목적임

○ 이러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의 전체적 최적화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관련 신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공간구조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그 시작으로 태풍, 해일 등에 대비한 스마트 물관리 도시 인프라 구축모형을 제안함

  - 이는 도시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과 함께 각종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도시 내 각종 인프라와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산된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와 활용이 지원되는 스마트시티 속에서, 해양재난·재해에 대응한 방재기술 적용 수준을 넘어 도시 인프라 및 공간모델 기반구축이 전제되어 보다 완전한 시민 체감형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서비스를 구현

2. 향후 연구과제

- **과제명: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기획연구 – 해양재난안전 지능형모델 구축사업**
- **키워드: 해양스마트, 해양안전도시, 재난안전정보, 지능형모델, 해양무인체**

Key Word: Marine Smart City, Marine Safe City, Disaster Information for Safety, Intelligent Model, Unmanned Maritime System

▌사업의 목표

해양(연안)공간에서 특히 요구되는 **재난·재해 대응 계획·기술을 스마트도시와 접목**하고 **해양수도 부산에 시범적용** 함으로써 **해양스마트도시 표준모델 개발 및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

○ 해양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지능형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모델 개발

– 우리나라 연안지역 기초정보 구축 및 체계화

• 과학적 조사자료의 축적 및 체계적 수집·활용·운용 기반 마련

• 재난안전관리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통합, 분석·예측, 전파 시스템 개발

– 지능형 해양안전도시 계획모델 및 기반체계(인프라+플랫폼) 개발

• 물순환성 향상 등 그린인프라, 침수대비 저류·방재시설 등

○ 스마트시티에 해양재난·재해 관련 요소 접목을 통한 지능형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기술요소 개발

– 해양재난안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적용 기술요소 도출

• 해양안전도시 맞춤형 지능형 기술 개발

– 해양재난·재해에 강항 핵심 기술요소 개발

• 물 순환성 향상 등 그린인프라, 방재시설 등

○ 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적용가능한 기술요소의 단계적 실증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한 해양스마트도시 표준모델 개발 실현

– 초년도 시범사업 발굴 및 실증기반 마련

– 기술 고도화 및 추가 기술요소 개발을 통한 해양스마트도시 표준모델 개발

▌사업의 주요내용

○ 과학적 조사자료의 축적 및 체계적 활용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신기술 적용이 전제된 지속가능한 지능형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모델 발굴을 위해 지능형 정보시스템 기반 관련 기초적 틀 연구

- 해양재난·재해에의 선제적 대응에 특화된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개념 및 기본방향 정립
- 미래 해양재난·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 해양 및 연안지역 관련 기존 과학적 조사자료의 활용가능성 및 고도화 작업 필요성 검토
  - AI기반 해양재난·재해 사전 예측기법 개발수준 검토
  - 해양재난정보의 체계적 수집·저장과 연계·통합, 분석 등이 가능한 표준화 기반 체계 개발

○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의 지능형 모델 개발

- 지능형 해양안전도시 계획모델 구상
- 해양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모델 및 플랫폼 개발
- 해양재난·재해 피해저감 예측기술 개발
- 해양(연안)공간 이용 및 관리 관련 기술개발과의 연계방안

○ 연안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수, 풍랑, 태풍 등 해양재난·재해에 강한 맞춤형 기술요소 개발

-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및 기술요소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연안도시 특성 연구
- 우리나라 연안지역에서의 해양재난·재해 발생 및 피해특성 분석과 재난안전 예방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 해양재난안전 시나리오별 적용 계획 및 기술요소 도출
- 핵심기술 개발수준 점검과 도입·적용 가능성 검토
  - 스펀지시티 개념과 스마트 물순환시스템 구축, 스마트 그리드형 복합플랜트 건설기술, 최첨단 방재기술 등

○ 적용가능한 기술요소의 단계적 실증 및 고도화 전략 마련

- 초년도 시범사업 발굴 및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위한 해양스마트도시 재난안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해양무인체 운용시스템 실증 및 고도화 사업 기획
  - 해양무인체 자율주행 설계
  - 해양무인체 기반 통신망 구축 및 규제특례 발굴
  - 해양무인체 자율운항 R&D 실증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
  - 해양 스마트빅보드 도입
    * 해양 스마트빅보드: 해양재난의 종합적 상황판단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 재난대응 해양무인체 기술 및 운용시스템 고도화 전략

▌사업의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해양(연안)을 공간적 범위로 한 새로운 스마트도시 모델 발굴로 기존 기술 및 신규 개발된 미래기술의 접목과 실증·상용화를 위한 기반 확보 가능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접목될 수 있는 핵심기술 및 민간참여 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선도기술 개발 및 확산에 기여
  * 지능형 해양무인자율운항 시스템의 탑재체, 활용기술 등은 국제적 수준의 기술을 선도하며, 지능형 해양무인자율운항체의 경우 선진국에서도 초기단계의 기술수준으로 실용화 사례가 없음. 따라서 동 기술의 선점은 과학, 산업, 군사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큼

○ 산업적 측면

- 지능형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융합 분야의 선점이 필요하며, 정보통신, 탐지기술, 제어기술, 데이터처리기술과 해양장비 개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미래 신해양산업 분야로 육성 가능
- 해양(연안)을 공간적 범위로 새롭게 발굴된 스마트시티 모델은 스마트시티의 기본적인 도시 플랫폼 위에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도입·접목됨으로써 건설기술의 실용화 과정을 거쳐 신산업 창출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

○ 지역적 측면

- 해양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단계적·체계적 접근으로 해양도시 부산의 정책목표인 해양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실현
- 안전성 등 시민체감이 높은 미래 혁신기술의 실용화·상용화로 대정부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영위에 기여

참 고 문 헌

1.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3. 김갑성, 2018. Smart City 정부정책 방향
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8.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Ⅰ: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5. 김태경 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전략
6. 박신원, 2018.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과 발전전략
7. 김명수, 2017.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안
8. 김미진, 2016. 해양도시의 공간적 변화가 여가관광시설의 유형과 입지에 미치는 영향
9. 김명수 외, 2016.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형 도시방재정책 연구
10. 신상영 외, 2014. 서울형 안전도시 모델 모색

부 록

관련 법령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8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2017. 12. 26., 2019. 4. 23.>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21.>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 3. 21.>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8. 14.>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2013. 3. 23., 2017. 3. 21.>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3. 21.]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8. 8. 14.>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7. 3. 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7. 3. 21.>
⑥ 삭제 <2015. 12. 29.>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9.,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 3. 21.>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9., 2017. 2. 8., 2017. 3. 21., 2019. 4.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9. 4. 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제13조 삭제 <2015. 12. 29.>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 3. 21.]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26., 2009. 6. 9., 2010. 5. 31., 2011. 4. 14., 2011. 8. 4., 2014. 1. 14., 2016. 12. 27., 2017. 1. 17., 2017. 8. 9., 2017. 11.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5. 12. 29.]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 5. 23., 2017. 3. 21.>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 3. 21.>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 3. 21.>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2018. 8. 14.>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23.>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3. 21., 2017. 7. 26.>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3.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목개정 2017. 3. 21.]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과 효율적인 개발·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개발
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3. 21.]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4조의3(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 3. 21.>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3. 2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 3. 21.>]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7. 3. 21.>]

제27조(연구・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삭제 <2017. 3. 21.>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 3. 21.>]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 3. 21.>]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28조에서 이동 <2017. 3. 21.>]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1조(금융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7. 3. 21.]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 <신설 2018. 8. 14.>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종전 제35조는 제47조로 이동 <2018. 8. 14.>]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관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8. 8. 14.]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개발 또는 치안·안보·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본조신설 2018. 8. 14.]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46조(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임대·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축·임대·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임대·운영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8장 벌칙 <신설 2018. 8. 14.>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5조에서 이동 <2018. 8. 14.>]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본조신설 2019. 4. 23.]

부칙 <제16388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의2,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2019. 4. 18]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4.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6.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7.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 항만·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4. 항만·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수립·변경과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607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전에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3.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4.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6.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7. 항만·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8.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첩하여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에 대하여 설정된 관리의 우선순위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5호의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7호의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박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4. 「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군사활동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④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617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6.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10.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11.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14.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등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제특례 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 각 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 재원조달방법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화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화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화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화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화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인가·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특례 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특화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유형 전환,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 산·학·연 간 협업 등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50조(「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 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권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체육관련 특화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닭·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68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등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 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대상으로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둔다.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규제개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등을 심사하거나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허가등의 의제 관련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7.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8.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0.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11.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라 한다)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의 변경 심의·의결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도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해당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사후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실증사업자는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86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⑪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⑬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특구"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건축법」 제6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일부(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건축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처마, 차양 등 돌출된 부분이 있는 공장(규제자유특구에 위치하는 공장에 한정한다)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4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하며 규제자유특구에 건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또는 출자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8조(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① 제99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인·허가절차 특례는 규제자유특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을 수립·승인·변경(이하 "사업인·허가"라 한다)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0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산업단지"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구역·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으로,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제8조제2항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본다.

제10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통합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등의 여부를 심의한다.
③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02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미비로 협의가 어려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제10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0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책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0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같은 법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를 말한다)가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법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 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이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시·도"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로, "특화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본다.

제11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위한 시·도 조례를 제정·개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자유특구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지정·관리 방법 및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2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 및 제23조의7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역설정 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을 따른다.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7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태양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9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농업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탄소섬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0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커목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제133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하 "공동품질관리자"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자·학교·연구소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에게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등을 기재·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그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37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으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관광식당업소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할 수 있다.

제138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같은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기공급사업자"라 한다)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와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기공급사업자에게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민간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요금 등 공급조건,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조성하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중 총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승인·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할 수 있는 주택호수(공동주택은 세대수를 말한다), 층수, 토지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주택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시설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특화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특화사업자,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실증사업자 및 지역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자 및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2. 제1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화특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 제89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4. 제91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14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5장 벌칙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6175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85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창의연구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본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창의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